

관세연구19-03

최소부과원칙 규정 개정사례 연구

2019. 12

최소부과원칙 규정 개정사례 연구

2019. 12

연구진

연구책임자

정 재 현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원

노 영 예 선임연구원

목 차

I. 서론	7
II. WTO의 최소부과원칙 규정	12
1. 최소부과원칙의 정의 및 WTO 규정	12
2. 2007년 의장 초안	15
III. 우리나라의 최소부과원칙 규정 및 적용 현황	21
1. 관련 규정	21
2. 국내 산업피해 유무 조사방법	23
3. 국내 산업피해 수준 산정	24
IV. 호주 및 EU의 최소부과원칙 관련 규정 및 적용 현황	31
1. 호주	31
가. 관련 규정	31
나. 국내 산업피해 산정	33
다. 최소부과원칙 적용 현황	35
라. 최소부과원칙 개정 규정	39
2. EU	41
가. 관련 규정	41
나. 국내 산업피해 산정	42
다. 최소부과원칙 적용 현황	45
라. 최소부과원칙 개정 규정	47

V. 호주 및 EU의 최소부과원칙 개정 규정 적용 사례	52
1. 호주	52
가. 중국 및 말레이시아 팔레트레크 사례(EPR 441)	52
나. 중국 원형 합금바(alloy round steel bar) 사례(EPR384)	56
다. 중국, 브라질, 인도네시아, 태국 A4용지 사례(EPR 341)	59
2. EU	62
가. 스테인리스 철강 압연제품(Stainless steel hot-rolled flat products, SSHR) 사례(Case AD658)	62
나. 비료원료(mixtures of urea and ammonium nitrate) 사례(Case AD649)	64
다. 기타 중국 철강바퀴 사례(Case AD652)	68
VI. 국제 비교 및 소결	70
1. 시장의 왜곡 관련 규정	71
2. 중소기업 관련 규정	73
3. 기타 관련 규정	74
가. 노동 및 환경 관련 규정	74
나. FTA 관련 규정	76
참고문헌	77

표 목차

〈표 II-1〉 WTO 반덤핑협정상 최소부과원칙 규정	14
〈표 II-2〉 2007년 의장 초안(TN/RL/W/213)	18
〈표 II-3〉 2008년 수정안(TN/RL/W/236)	20
〈표 III-1〉 2016~2018년 우리나라 산업피해 구제 산정 사례	30
〈표 IV-1〉 2017~2019년 호주의 최소부과원칙 적용 현황	37
〈표 IV-2〉 2018~2020년 EU의 최소부과원칙 적용 현황	46

I. 서론

- 1947년 GATT를 이어받은 WTO 체제가 1995년 출범함으로써 무역에서 공정한 경쟁률을 도입하고자 GATT의 덤핑 및 보조금, 긴급 수입제한 조치에 대한 규정들을 보다 체계화된 규범으로 발전시켰음
 - 이러한 WTO 규범들을 바탕으로 회원국들은 불공정무역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무역구제제도를 구축해 왔음
 - 무역구제제도는 외국에서 수입하는 제품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자국 산업에서 매출 감소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원인을 따져 국가에서 그 제품의 수입을 제한하는 제도를 의미함
 - 일반적인 피해원인은 특정 물품의 덤핑수입, 외국정부의 보조금·장려금 정책, 예상치 못한 수입 급증 등 세 가지며, 반덤핑관세 부과, 상계관세 부과,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 조치) 발동 등과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등을 통해 시행되고 있음
- 특히 반덤핑제도는 우루과이라운드를 통해 ‘1994년 GATT 제VI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VI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 이하 반덤핑협정)이 체결된 후 WTO 회원국들이 불공정무역을 구제하기 위하여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제도임
 -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EU, 중국, 호주, 일본 등 다양한 국가들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대표적인 제도로 볼 수 있음
 - 반덤핑관세제도란 해외 수출자가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물품을 수출하여 국내 산업에 피해를 줄 시 덤핑방지 관세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는 제도임

-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해 발생 우려가 있을 때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음
- 국제법상 WTO 반덤핑협정 및 국내법상 「관세법」,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등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음
- 그러나 미국은 2017년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자국 우선주의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정책의 일환으로 무역구제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반덤핑의 경우 국내법을 개정하여 요건을 완화하고 위반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사용하고 있음
- 2015년 6월 서명된 미국의 「무역특혜연장법」(TPEA)을 통해 반덤핑 및 상계관세 법령이 개정되어 불리한 가용정보(Advers Facts Available) 적용, 산업피해 판단, 특정시장상황(Particular Market Situation) 등에서 조사당국의 재량권을 강화하며 고율의 덤핑마진을 산정하고 있음
- 이러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를 비롯하여 중국의 시장경제 지위 만료에 따른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에 따라 각국은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반덤핑과 관련하여 규정의 개정 및 정비로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 특히 2001년 중국이 WTO 가입 시에 부여되었던 비시장경제 지위(Non Market Economy, NME)가 2016년 만료되면서, 중국에 높은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되자 각국은 이와 관련하여 국내법을 정비하기 시작하였음
 - 시장경제 지위는 국가의 원자재·제품 가격, 임금, 환율 등이 정부의 간섭에 의해서가 아니라 시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제체제를 갖추었음을 교역 상대국이 인정할 때 부여하는 지위로, 과거 사회주의체제 국가의 덤핑수출을 규제하기 위해 적용되었음
 - 비시장경제 지위 국가는 덤핑이 쟁점인 통상 분쟁에서 자국의 국내 가격이 아닌 시장경제 지위를 지닌 제3국의 가격과 비용을 기준으로 반덤핑 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패소율이 높고 고율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받게 됨
 - 중국은 15년간(2001~2016년) 비시장경제 지위를 부여받는 조건으로 WTO에

가입하였으며, 시장경제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여 러시아, 브라질, 뉴질랜드, 호주 등 많은 국가들로부터 시장경제 지위를 인정받아 오고 있었음¹⁾

- 특히 중국의 비시장경제 지위가 만료되었을 시 조사당국이 시장경제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갖게 됨
 -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이 NME 조항 만료에 따라 자동으로 시장경제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반대의 경우 시장경제 지위는 사실에 근거하여 검토 후에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 특히 WTO 반덤핑협정을 살펴보면 회원국들이 자체적으로 반덤핑 조사, 판정 등의 제도를 운용하는 큰 틀을 제공하고는 있으나 나라별 시행방법에 대해 상당한 재량권이 주어지고 있으며, 규정 또한 의무보다 권고의 형태로 이루어진 부분도 존재함
- 권고 규정은 WTO 협정상 의무 규정이 아니므로 각국의 재량하에 적용의 유무가 결정되어 자국 상황에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음

- 최소부과원칙 또한 WTO 반덤핑협정에 따른 권고 규정 중의 하나로, WTO 반덤핑협정문 제9.1조에서 덤핑마진 미만의 관세가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를 제거하기에 적절한 경우에는 동 관세는 덤핑마진 미만으로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WTO 회원국들은 각국의 입장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최소부과원칙의 적용 여부를 선택 및 운영 중에 있음

- 미국, 중국 등의 국가는 최소부과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있으나 한국을 비롯한 뉴질랜드, 베네수엘라, 터키, 멕시코, 브라질, EU, 호주, 캐나다, 콜롬비아 등은 이를 적용 중에 있음

1) KIEP 중국전문가포럼, <https://csf.kiep.go.kr/expertColr/M004000000/view.do?articleId=16825>, 검색일자: 2020. 2. 6.

- 최소부과원칙의 적용과 관련하여 EU같이 법 규정에 내용을 명시하여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나라도 있는 반면, 한국, 호주와 같이 관세 관련 법이 아닌 예규 또는 지침을 통해 적용하는 방식으로 실시하는 나라도 있음
- 또한 멕시코의 경우와 같이 최소부과원칙을 실무적으로 적용하여 WTO 반덤핑 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를 통해서 산정 방식을 확인할 수 있는 국가도 있음
 - EU는 법 규정에 최소부과원칙의 적용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으나 산정 방식은 멕시코와 마찬가지로 제출된 자료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음
- 최소부과원칙 의무화를 주장해 오던 EU를 비롯한 호주, 인도 등은 최근 최소부과 원칙을 폐지하거나 예외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하고 있음
- 한국 또한 최소부과원칙을 통해 산정된 반덤핑관세 부과 수준이 국내 산업의 피해 구제에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 왔음²⁾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소부과원칙 관련 규정을 개정한 국가를 중심으로 개정 규정의 내용 및 개정된 규정을 반영한 최근 조사 개시 및 판정 사례를 중심으로 조사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최소부과원칙 규정 개정을 위한 방안을 살펴보고자 함
- 최소부과원칙과 관련한 선행연구는 WTO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자국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피해마진 산정 방식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음
 - 원종학 외(2007)에서는 공공의 이익을 고려한 피해마진 산정 Undercutting 방식 대신 Underselling 방식을 사용한 피해마진 산정 등에 대해 연구하였음
 - 한정택 외(2012)에서는 산업피해 구제 수준을 산정할 시 공공의 이익 고려 및 Underselling 방식의 사용, 개별 마진의 반영 등을 제안하였음
 - 표인수 외(2018)에서도 피해마진 산정 시 개별 마진의 반영, 공공의 이익 반영 등을 제안하였음

2) 김광석, 「EU와 비교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반덤핑제도의 개선방향」,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p. 24.

- 본 연구는 제I장 서론을 포함하여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제II장 WTO의 최소부과원칙 규정에서는 최소부과원칙의 정의와 WTO 반덤핑 협정문상 규정 및 2007년 의장 초안, 2008년 수정안의 내용 및 각국의 최소부과원칙 도입에 대한 입장 차이를 조사하였음
 - 제III장 우리나라의 최소부과원칙 규정 및 적용 현황에서는 「관세법」 및 무역에 관한 관련 규정 및 내용, 국내 산업피해 유무 조사방법 및 산업피해 구제 사례 현황 등에 대해 조사하였음
 - 제IV장 호주 및 EU의 최소부과원칙 규정 및 적용 현황에서는 호주와 EU의 관련 규정, 산업피해 유무 조사방법 및 개정 규정과 개정 규정의 적용 현황 등에 대해 조사하였음
 - 제V장에서는 호주 및 EU의 최소부과원칙 개정 규정이 적용된 사례 및 각국의 입장을 조사하였음
 - 제VI장에서는 호주 및 EU의 최소부과원칙 개정 규정 및 적용된 사례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최소부과원칙 규정에 대한 시사점 및 한계점 기술하였음

II. WTO의 최소부과원칙 규정

1. 최소부과원칙의 정의 및 WTO 규정

- 국제무역에서 덤핑이라 함은 GATT 1947 제6조에서 정의되고 있는 개념으로, 덤핑에 대해 수출물품의 가격이 수출물품과 동일한 국내 판매물품의 가격보다 낮은 경우로 정의하고 있음
 - 1933년 세계경제회의(World Economic Conference)에서 자유로운 국제 무역 질서 유지를 위해서 부당하게 상대국 시장에 저가로 덤핑 수출하는 행위를 막아야 한다는 필요성이 논의되었음³⁾
 - 1946년 국제무역기구(ITO) 설립 및 GATT 체결 과정에서 협상에 참여한 대다수 국가들은 덤핑 행위에 대하여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여 GATT 제6조의 덤핑방지관세 규정으로 도입하였음
 - 수출품의 가격과 국내 동종물품의 가격 결정은 수출국과 원산지국 및 수입 국내의 특별한 상황에 따라 변화하므로 국제무역에서의 덤핑은 보다 광범위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
 - 국제시장에서의 덤핑이란 결국 가격 차별화로, 특정 상품을 자국시장에서 판매할 때보다 특정 국가에 더 낮은 가격으로 판매(수출)하는 것을 의미함
- 최소부과원칙(Lesser-Duty Rule)은 산업피해를 제거할 수 있다면, 덤핑마진(수출자의 자국 내 판매가격과 수출가격의 차이)과 피해마진(수입국 내 국내 산업의 판

3) 무역위원회, 『30년사 공정무역 질서 확립 30년을 담다』, 2017, p. 102.

매가격과 수입가격(수출자의 수출가격)의 차이) 중 적은 것만큼만 반덤핑관세가 부과되도록 하는 원칙을 의미함

- 반덤핑관세의 수준을 국내 산업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한함으로써, 반덤핑관세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반덤핑관세 부과가 수입국 전체 이익에 반하는 결과를 막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임

□ 최소부과원칙은 근본적인 제도의 취지에 따라 광의의 개념과 협의의 개념으로 분류할 수 있음⁴⁾

- 광의의 개념에 따르면 반덤핑제도에서 공익(public interest)을 고려하여 덤핑률보다 낮은 수준의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
- 협의의 개념에 따르면 최소부과원칙은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 산업의 보호 수준까지만 조치를 취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WTO 반덤핑협정에서 의미하는 최소부과원칙은 후자를 의미한다는 견해도 있음⁵⁾

□ 최소부과원칙은 WTO 반덤핑협정 제9.1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강제성이 없는 권고의 형태로 규정되어 있음

-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모든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것인지의 여부와 부과되는 반덤핑관세의 세액을 덤핑마진의 전액으로 할 것인가 또는 그보다 적게 할 것인가의 여부는 수입 회원국 당국이 결정함
- 모든 회원국의 영토 내에서의 부과는 임의적인 것이 바람직하며 또한 덤핑마진 미만의 관세가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를 제거하기에 적절한 경우 동 관세는 덤핑마진 미만으로 되는 것이 바람직함
 - 최소부과원칙의 적용과 관련하여 ‘의무(mandatory)’라는 표현 대신 ‘바람직하다(desirable)’라는 권고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

4) 표인수, 유세열, 『무역구제제도의 활성화와 우회덤핑 및 최소부과원칙(lesser-duty rule)의 재검토』, 한국국제통상학회, 2018, p. 79.

5) 이진호, 「반덤핑 조사시 Lesser duty 적용에 관한 연구」, 『무역구제』 2001-봄호, 무역위원회, 2001, p. 138.

- 반덤핑협정에 따르면 ‘최소 관세(lesser duty)’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9.1조에서 이러한 용어는 전액의 덤핑마진(full amount of the margin of dumping)보다는 적은 반덤핑관세의 개념을 의미하고 있음⁶⁾
- 반덤핑협정 제9.1조에서는 그러나 덤핑마진 미만의 관세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고 있음
- 또한 회원국들이 반덤핑관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최저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면에서 논의의 대상이 되어옴⁷⁾
 - 미국은 덤핑수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내 산업의 피해(공장 가동 중단, 해고 등)에 대해 상쇄가 불가능하며 피해 구제를 위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들기 때문에 최소부과원칙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임
 - 가장 먼저 최소부과원칙을 도입하여 실행하고 있는 EU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조사 당국의 노력 여부에 따라 산업피해 수준 산정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

〈표 II-1〉 WTO 반덤핑협정상 최소부과원칙 규정

Article 9 Imposition and Collection of Anti-Dumping Duties
9.1 The decision whether or not to impose an anti-dumping duty in cases where all requirements for the imposition have been fulfilled, and the decision whether the amount of the anti-dumping duty to be imposed shall be the full margin of dumping or less, are decisions to be made by the authorities of the importing Member. It is desirable that the imposition be permissive in the territory of all Members, and that the duty be less than the margin if such lesser duty would be adequate to remove the injury to the domestic industry

자료: 무역위원회, <http://www.ktc.go.kr/uploads/wto/WTO-GATT.pdf>, 검색일자: 2020.1.7.)

6) 무역위원회, http://www.ktc.go.kr/file/db/pdf/TR/TR347_01.pdf, 검색일자: 2020. 1. 7.

7) 무역위원회, http://www.ktc.go.kr/file/db/pdf/TR/TR347_01.pdf, 검색일자: 2020. 1. 7.

2. 2007년 의장 초안

- WTO 반덤핑협정에 따라 최소부과원칙은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강행 규정이 아니라 임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권고 규정⁸⁾이므로, 국가별로 본 규정의 적용 여부를 결정함⁹⁾
 - 반덤핑제도를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미국, 중국 등의 국가는 최소부과원칙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현재 한국 및 뉴질랜드, 베네수엘라, 터키, 멕시코, 브라질, EU, 호주, 캐나다, 콜롬비아 등의 국가에서는 최소부과원칙에 관한 규정 혹은 지침을 두어 반덤핑 관세를 산정하고 있음
- 그러나 최소부과원칙을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 사이에서도 산업피해 구제 수준 산정방법이 일치하지 않아 반덤핑프렌즈 그룹⁹⁾에서는 DDA 협상에서 최소부과원칙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였음¹⁰⁾
 - 우리나라는 WTO 반덤핑협정과 관련하여 반덤핑프렌즈 국가들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반덤핑 조사 및 조치의 피해를 보다 많이 입고 있어 엄격한 반덤핑 조사 관련 규정을 요구하는 입장임
 - 반덤핑프렌즈 그룹은 반덤핑관세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규율을 강화하자는 입장에 있음
 - 미국 등은 반덤핑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입장에서 현재의 규정을 존속시키길 희망하고 있음
 - 이 가운데 인도와 브라질 등은 반덤핑 조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전략으로

8) 표인수, 유세열, 『무역구제제도의 활성화와 우회덤핑 및 최소부과원칙(lesser-duty rule)의 재검토』, 한국국제통상학회, 2018, p. 80.

9) 반덤핑프렌즈란 반덤핑 조치의 자의적 운용이나 남발을 억제하고자 우리나라, 일본, 칠레 등의 주도로 WTO 반덤핑협정의 개정을 추진하는 데 의견을 같이 하는 공조 그룹을 의미함

10) 안민호, 「DDA 규범협상의 반덤핑협정 관련 주요 쟁점」, 『국제경제법연구』 제7권 제2호, 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09, p. 275.

규정별로 호불호를 가지고 접근하고 있음

- 반덤핑프렌즈 그룹은 임의 규정인 최소부과원칙을 의무화하고 산업피해 구제 수준 산정방식을 표준화할 것을 주장하였음¹¹⁾
 - 최소부과원칙을 15년 이상 적용 중인 EC는 이를 반덤핑협정상 의무로 규정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음
 - 중국은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최소부과원칙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 인도는 최소부과원칙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반덤핑협정 제9.1조를 개정하고, 피해마진 산정에 대한 원칙을 규율하기 위하여 반덤핑협정에 새로운 부속서 III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음
- 그러나 미국은 국내 산업피해 규모를 수치로만 환산하여 덤핑마진과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인식하에 반덤핑프렌즈 그룹의 주장을 반대하였음¹²⁾
 - 또한 최소부과원칙을 강화하는 경우 조사기관의 부담이 가중되므로, 개도국의 경우 부과원칙의 강화가 부담이 되는 점을 지적하였음
- 2003년 DDA 협상에서 한국을 포함한 16개 국가는 최소부과원칙에 대해 피해마진 산정 방안으로 세 가지를 제안하였으나, 국산품의 가격 또는 생산비 및 수입품의 가격을 비교만 할 뿐 덤핑의 유무에 따른 전체적인 상황을 비교한다는 주요점을 간과하였음¹³⁾
 - Price Undercutting method: 국산품의 공장 가격 및 수입품의 CIF 가격 차이 비교 및 필요에 따라 품질의 차이와 브랜드 충성도 등을 반영하여 조정된 가격으로 비교함

11) 손기윤, 「DDA 협상의 평가와 전망: 반덤핑협정」, 『국제경제법연구』 창간호, 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03, p. 57.

12) 안민호, 「DDA 규범협상의 반덤핑협정 관련 주요 쟁점」, 『국제경제법연구』 제7권 제2호, 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09, p. 275.

13) 한정택·조연상, 「반덤핑제도의 최소부과원칙 적용방식 개선방안」, 『통상법률』, 법무부 국제법무과, 2012, p. 26.

- Representative cost plus profit method: 국내 생산자 적정 비용 및 이윤을 중립가격으로 설정하고, 수입물품의 가격과 비교 및 필요에 따라 시장의 특성을 반영하여 조정된 가격으로 비교함
 - Non-dumped import price method: 비덤핑 수입품 가격을 중립가격으로 설정하고, 비덤핑 수입품 가격 및 수입품 가격을 비교하여 산정함
- 2005년 5월 반덤핑프렌즈 그룹은 피해마진을 국내 산업이 건전한 경쟁이 가능한 가격 수준인 중립가격(Non Injury Price, NIP)과 수입가격의 차이로 계산하되, 중립 가격의 산정은 다음의 방법 중 회원국이 재량으로 선택하도록 제안함
- 대신 이해관계자에게 소명할 수 있는 기회와 특정한 방법을 선택한 이유에 대한 설명을 의무화할 것을 제안하였음
 - 현재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가격
 - 덤핑수입 가격 영향 이전의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가격
 - 비덤핑 수입품의 판매가격
 - 국내 산업의 생산비용+합리적인 이윤
- 회원국 사이에서 최소부과원칙의 반영에 대해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2007년의 의장 초안에서는 최소부과원칙에 대한 권고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이 규정을 대신하여 공공의 이익(public interests) 규정을 신설하였음¹⁴⁾
- 미국과 같은 국가가 최소부과원칙을 운영하고 있지 않음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최소부과원칙을 운영하는 국가들도 최소부과원칙 규정을 적용하는 방식이 상이하여 규정의 존재 유무가 필요하지 않다는 견해가 제기되었었음
 - 본 규정에 따르면 반덤핑관세 부과 결정 시 공공의 이익에 따라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 이전에, 조사 당국이 제소자의 이익뿐만 아니라 공공의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에 대해 법규를 마련해야 함
 - 본 규정에서 명시하는 공공의 의미는 고려대상 수입품 또는 국내 동종물품을 투

14) 정재호·이재민,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제도 활용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3. 12, p. 48.

입재로 사용하는 생산업자(industrial user)이거나, 국내 산업에 이를 제공하는 공급자, 그리고 해당 제품이 소매단계에서 판매되는 경우 소비자(consumer)를 의미함

- 또한 본 절차를 적용하고 이에 따라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 WTO 분쟁 해결 및 국내 사법절차의 대상에서 본 내용이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표 II-2〉 2007년 의장 초안(TN/RL/W/213)

-
- 9.1. The decision whether or not to impose an anti-dumping duty in cases where all requirements for the imposition have been fulfilled, and the decision whether the amount of the anti-dumping duty to be imposed shall be the full margin of dumping or less, are decisions to be made by the authorities of the importing Member. It is desirable that the imposition be permissive in the territory of all Members, and that the duty be less than the margin if such lesser duty would be adequate to remove the injury to the domestic industry. Each Member whose national legislation contains provisions on anti-dumping measures shall establish procedures in its laws or regulations to enable its authorities, in making such decisions in an investigation initiated pursuant to Article 5, to take due account of representations made by domestic interested parties whose interests might be affected by the imposition of an anti-dumping duty. The application of these procedures, and decisions made pursuant to them, shall not be subject to dispute settlement pursuant to the DSU, Article 17 of this Agreement or any other provision of the WTO Agreement
36. Each such Member shall publish those procedures and shall notify them to the Committee pursuant to Article 18.5.
37. For the purpose of this paragraph, the term "domestic interested parties" shall include industrial users of the imported product under consideration and of the domestic like product, suppliers of inputs to the domestic industry and, where the product is commonly sold at the retail level, representative consumer organizations.
38. Decisions taken pursuant to these procedures are not subject to the judicial review requirements of Article 13.
-

자료: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TN/RL/W/213. 2007. 11. 30., https://docs.wto.org/dol2fe/Pages/FE_Search/FE_S_S009-DP.aspx?language=E&CatalogueIdList=95883,101909,69053,70293,81981,8216&CurrentCatalogueIdIndex=3&FullTextHash=&HasEnglishRecord=True&HasFrenchRecord=True&HasSpanishRecord=True, 검색일자: 2020. 1. 7.

- 2007년 초안에 대해서 각국의 입장은 상당히 대비되었으며,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할 때 적용되는 절차가 바람직한 것인지가 논의의 주 대상이 되었음
- 특히 그러한 관련 절차가 회원국의 주권을 침해할 수 있고 시간 낭비 및 추가비용을 요구할 수 있다는 미국, 일본, 이집트 등의 입장과 관련 절차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반덤핑프렌즈 그룹의 입장이 대비되었음
 - 특히 공공의 이익 규정이 사법적 재심이나 WTO 분쟁해결 절차의 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조사 당국이 본 규정을 위반하더라도 이를 제제할 수단이 없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음
- 대부분의 회원국들이 공공의 이익 규정을 의무화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으나 산업피해마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실제로 완벽히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반대하는 의견도 제시되었음¹⁵⁾
 - 관련 산업피해의 정도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이 쉽지 않고 측정을 위한 구체적인 방식 자체 또한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음
- 다수의 회원국들이 공공의 이익 규정과 최소부과원칙은 별개이며 상호 대체적인 개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함에 따라 공공의 이익이 최소부과원칙과 대체되는 개념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음¹⁶⁾
 - 최소부과원칙 의무적용 규정은 실제 덤핑방지관세율에 영향을 미치는 실체적 규정(substantive rule)이라고 한다면, 공공의 이익 규정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의무화하는 절차적 규정(procedural rule)이므로, 그 목적이 다른 별개의 규정으로 양립 가능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음¹⁷⁾
 - 한편으로 최소부과원칙이 결국에 공공의 이익을 감안하여 필요한 수준만큼의 반덤핑관세를 요구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었음

15) 박노형·박성훈, 『WTO 규범협상의 현황과 향후 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0. 8, p. 82.

16) 정재호·이재민,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제도 활용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3. 12, p. 48.

17) 법무법인 세종, 『DDA 반덤핑협정 의장 수정안 분석』 2009. 7, p. 9.

- 2008년 12월의 수정안에서는 DDA 규범 협상 과정에서 회람된 반덤핑협정에 대한 의장 초안(2007. 11)은 공공의 이익과 최소부과원칙을 둘러싼 의견대립이 첨예하다는 점을 밝히고, 2007년 초안의 제안을 철회하고 현행 협정문으로 다시 수정되었음

〈표 II-3〉 2008년 수정안(TN/RL/W/236)

9.1 The decision whether or not to impose an anti-dumping duty in cases where all requirements for the imposition have been fulfilled, and the decision whether the amount of the anti-dumping duty to be imposed shall be the full margin of dumping or less, are decisions to be made by the authorities of the importing Member. It is desirable that the imposition be permissive in the territory of all Members, and that the duty be less than the margin if such lesser duty would be adequate to remove the injury to the domestic industry. [PUBLIC INTEREST/LESSER DUTY: Participants are sharply divided on the desirability of a procedure to take account of the representations of domestic interested parties when deciding whether to impose a duty. Some consider that such a procedure would impinge on Members' sovereignty and would be costly and time-consuming, while others support inclusion of such a procedure. Issues related to any such procedure include the extent to which any such procedures should apply in the context of Article 11 reviews, whether the ADA's requirement for a judicial review mechanism should apply to decisions pursuant to any such procedure, and the extent to which WTO dispute settlement should apply. On lesser duty, many delegations strongly support inclusion of a mandatory lesser duty rule. Other delegations oppose the inclusion of such a rule, with one delegation noting that it was not practically possible to calculate an injury margin. Among those supporting a mandatory lesser duty rule, there are varying views about the appropriate degree of specificity for any new rules and the extent to which those rules should prescribe or prioritize particular approaches to determining the appropriate level of duty.]

자료: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TN/RL/W/236. 2008. 12. 19., https://docs.wto.org/dol2fe/Pages/FE_Search/FE_S_S009-DP.aspx?language=E&CatalogueIdList=95883,101909,69053,70293,81981,8216&CurrentCatalogueIdIndex=2&FullTextHash=&HasEnglishRecord=True&HasFrenchRecord=True&HasSpanishRecord=True, 검색일자: 2020. 1. 9.

Ⅲ. 우리나라의 최소부과원칙 규정 및 적용 현황

1. 관련 규정

- 우리나라의 덤핑방지관세제도는 1968년 「관세법」 제10조 부당염매 방지 관세라는 덤핑방지관세 성격의 규정을 도입함으로써 시작되었음¹⁸⁾
 - GATT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요건 및 절차와 관련된 규정이 미비하여 무역위원회가 설립되기 전까지는 적용되지 않았음
- 1983년 12월 「관세법」 전면 개정을 통해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요건을 GATT 규정과 동일하도록 수정하고 신청인이나 덤핑에 관한 조사기간을 정하는 등 1979년 반덤핑협정에서 규정하는 주요 내용을 도입하였음¹⁹⁾
- 무역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0년 3월 법령 개정을 통해 최소부과원칙을 「관세법」에 명문화하였다고 함
 - 덤핑방지관세가 실질적 피해 등을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부과해야 하는 것으로 개정함으로써, 덤핑률과 산업피해 구제 수준 중에서 낮은 것을 적용하는 최소부과원칙(lesser duty rule)을 관세법령에 규정하였음²⁰⁾
 - 덤핑수입에 의한 국내 산업피해를 구제하고 과도한 수입 규제로 소비자 또는 후방산업에 불필요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도입되었음²¹⁾

18) 안덕근, 「불공정 무역행위 및 산업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방안 연구」, 산업통상자원부,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연구소, 2012. 6, p. 3.

19) 무역위원회, 『30년사 공정무역 질서 확립 30년을 담다』, 2017, p. 123.

20) 무역위원회, 『30년사 공정무역 질서 확립 30년을 담다』, 2017, p. 123.

- 현재 우리나라는 「관세법」 제51조 및 제52조 제2항에서 임의의 최소부과원칙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덤핑방지관세를 덤핑마진 이하로 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이 최소 부과원칙을 명확히 법에 명문화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의견도 있었음²²⁾
- 「관세법」 제51조에서 덤핑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정상가격 및 덤핑 가격 간의 차액에 상당하는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²³⁾
 - 국내 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또는 주무부장관이 부과 요청을 한 경우, 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실질적 피해 등이 있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었을 경우 해당 국내 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면 정상가격과 덤핑가격 간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음
- 「관세법」 제52조 제2항에서는 기획재정부장은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때 관련 산업의 경쟁력 향상, 국내 시장구조, 물가안정, 통상협력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²⁴⁾
 - 「관세법」 제52조 제2항의 취지는 산업보호와 육성을 목표로 하는 무역위원회의 무역구제 조치 권고가 구조적으로 국내 산업 보호 성격이 강하며, 그러한 정책적 판단이 과다할 경우 보다 중립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정책적 요소들을 반영하여 기획재정부가 최종 관세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음²⁵⁾
 - 제52조 제2항은 2016년 개정되었으며 기존의 조항에 국내 시장구조를 추가로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21) 안덕근, 「불공정 무역행위 및 산업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방안 연구」, 산업통상자원부·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연구소, 2012. 6, p. 2.

22) 원종학·구자은·김태훈·조진권, 『외국의 덤핑방지관세제도 중 최소부과원칙 운영현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07. 12, p. 99.

23)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6544#>, 검색일자: 2020. 1. 9.

24)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6544#>, 검색일자: 2020. 2. 3.

25) 안덕근, 『산업피해 구제 수준의 합리적 운용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2009를 요약함

- 기획재정부장관은 덤핑방지관세 또는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수입물품의 공급 감소에 따라 국내 시장의 독과점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등 국내의 시장구조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1991년 일본 및 미국산 폴리아세탈 수지 건에서 처음으로 산업피해 구제 수준을 산정하고 덤핑마진과의 비교를 통하여 낮은 수준으로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이래로, 한국은 모든 덤핑 조사 건에서 최소부과원칙을 적용하고 있음²⁶⁾
- 산업피해 수준 산정 방법에 대해서는 「관세법」 및 관련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으며, 무역위원회의 「덤핑수입 또는 보조금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국내 산업피해조사 실무지침」에서 규정하고 있음
 - 무역위원회예규 제2010-2호 「덤핑수입 또는 보조금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국내 산업피해조사 실무지침」에서 국내 산업 수준 검토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최소부과원칙과 관련된 규정은 2010년 적정 영업 이익율로 한국은행의 자료를 우선 적용토록 하던 실무지침을 국내 산업의 영업 이익율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한 것을 제외하고는 개정된 적이 없었음

2. 국내 산업피해 유무 조사방법²⁷⁾

- 무역위원회에서 국내 산업피해 유무 조사를 담당하고 있으며 국내 산업피해 유무의 분석 및 검토 시에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고 있음
 - 덤핑수입으로 인한 덤핑물품 수입량 및 그 덤핑수입이 국내 시장의 동종 물품가격에 미치는 영향, 해당 물품 수입이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생산자에게 미

26) 표인수·유세열, 『무역구제제도의 활성화와 우회덤핑 및 최소부과원칙(lesser-duty rule)의 재검토』, 한국국제통상학회, 2018, p. 88.

27) 무역위원회예규 제2010-2호 「덤핑수입 또는 보조금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국내 산업피해조사 실무지침」을 바탕으로 작성함

치는 영향을 실질적인 증거(positive evidence)에 따라 객관적인 방법으로 검토하여야 함

- 국내 산업의 상태와 관련된 지표들 및 관련 기타 경제적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
- 국내 산업피해 유무에 대한 판정은 조사에서 밝혀진 사실에 따라 판정해야 하므로 조사 기간 동안 통계수치를 추세적으로 분석할 수 있어야 함

□ 덤핑수입의 영향을 분석하는 국내 산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 덤핑수입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분석대상이 되는 국내 산업은 덤핑 수입물품과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생산 부분을 의미함
- WTO 반덤핑협정 제3.6조에 따라서 생산 공정, 매출, 이윤 등이 별개로 구분될 수 없을 시 동종물품이 포함되고 필요한 정보를 입수하는 것이 가능한 최소범위의 물품을 그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음

□ 무역위원회는 산업피해 유무의 분석 및 검토를 위해 국내 생산자·수입자·수요자·외국 수출자의 답변, 관세청 통계자료, 무역협회와 생산자단체(협회, 조합 등)의 발표자료 및 산업 전문 간행물의 통계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음

3. 국내 산업피해 수준 산정²⁸⁾

□ 국내 산업피해 수준을 산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식은 다음의 세 가지임

- 국산품의 실제 판매가격과 덤핑 수입물품 판매가격의 차이
- 국산품의 적정 판매가격과 덤핑 수입물품 판매가격의 차이
- 위의 두 가지 방식으로 국내 산업피해를 제거하기에 적절한 구제 수준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국산품의 적정 판매가격과 국산품의 실제 판매가격과의 차이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음

28) 무역위원회예규 제2010-2호 「덤핑수입 또는 보조금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국내 산업피해조사 실무지침」을 바탕으로 작성함

□ 국산품의 실제 판매가격과 덤핑 수입물품의 판매가격의 차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식은 'Price Undercutting 방식'이라고 불리며 덤핑 수입물품에 의해 국산품 판매가격 상승이 억제 및 하락하지 않은 경우에 사용함

- 산업피해 구제 수준 = $\frac{\text{국내 생산품 실제 판매가격} - \text{수입품 판매가격}}{\text{CIF 수입가격}} \times 100$
- 국내 생산품 실제 판매가격은 국내 생산물품에 대한 도매업자의 공장도 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수입품 판매가격은 CIF 수입가격과 관세, 통관 비용, 중간유통 마진을 모두 더한 가격으로 산정함
- 피해 수준은 수출국 혹은 수출자별로 산출하며 전체 가중 평균가격을 비교 또는 다양한 모델이 있는 물품의 경우에는 대표적인 모델(국내 시장에서 국산품 매출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모델)을 선정하여 산출함
- 무역위원회의 실무에 따르면 실무적으로 Price Undercutting 방식과 Price Underselling 방식을 순서대로 적용한 후 합리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시 마지막으로 국산품 가격인하 방식을 적용하고 있음²⁹⁾

□ 피해를 산정하는 목적이 덤핑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가격 측면에서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보았을 때 Price Undercutting 방식은 국산품 가격이 변화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모순이 있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음

- 수입품의 저가 판매가 없었을 경우 형성될 가격과 새로이 형성된 판매가격 간 피해마진이 고려되지 않음³⁰⁾
- 예를 들어 저개발국의 물품 가격이 낮은 것은 덤핑에 의한 사실도 있으나 품질이 반영되는 경우도 있음³¹⁾
- 중국의 제품 피해마진이 일본산 제품의 피해마진보다 높게 나오는 것도 같은 이유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있음³²⁾

29) 홍순파, 『산업피해 구제 수준에 대한 검토』, 무역구제논단, 2005. 6, p. 13.

30) 원종학·구자은·김태훈·조진권, 『외국의 덤핑방지관세제도 중 최소부과원칙 운영현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07. 12, p. 17.

31) 한정택·조연상, 『반덤핑제도의 최소부과원칙 적용방식 개선방안』, 2012. 10, p. 28.

32) 홍순파, 『산업피해 구제 수준에 대한 검토』, 무역구제논단, 2005. 6, p. 17.

□ 국산품의 적정 판매가격과 덤핑 수입물품의 판매가격의 차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식은 'Price Underselling 방식'이라고 불리며 덤핑 수입물품의 판매가격에 의해 국산품의 판매가격 상승 억제 또는 하락한 경우에 사용함

$$\bigcirc \text{ 산업피해 구제 수준} = \frac{\text{국내 생산품 적정 판매가격} - \text{수입품 판매가격}}{\text{CIF 수입가격}} \times 100$$

○ 국내 생산품 적정 판매가격은 일반적으로 국내 생산품의 도매업자에 대한 공장 도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단위당 제조원가+단위당 판매비)÷(1-적정 영업이익률)로 산출함

○ 적정 영업이익률은 해당 국내 산업의 실제 자료에 기초한 실제 평균이익률³³⁾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i) 이해관계인의 정당한 사유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였거나 (ii) 해당 국내 산업의 실제 평균이익률이 용이하게 추산되지 못하는 등 다른 이윤율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 이윤율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음

- ① 한국은행이 발간하는 『기업경영분석』상 해당 산업에 대한 평균이익률
- ② 국내시장 동일부류 상품의 실제 평균이익률
- ③ 조사대상 물품으로 인한 덤핑 피해가 없다고 간주되는 외국의 해당 산업 동종물품 생산자들의 실제 평균이익률
- ④ 기타 합리적 방법에 근거한 이익률

□ 적정 영업이익률 산정대상 기간은 덤핑으로 인한 피해 직전(신청인의 의사를 존중하되, 생산·판매·손익 등을 종합하여 판단)의 3개 연도를 원칙으로 하되, 상기 3개 연도를 산정대상으로 고려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름

○ 설정기간 중 일부 연도가 부적절하다는 이해관계인의 주장이 제기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그러한 연도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산정대상 기간으로 정하도록 함

33) 영업이익률(매출액에 대한 영업이익의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매출액 영업이익률 또는 영업이익률이라고 한다. 영업이익은 매출총이익에서 영업비를 공제한 것) 또는 경상이익률(영업이익에서 다시 금융비용 및 소득, 환차손익, 유가증권 매매손익 등을 더하거나 뺀 것이 '경상이익'이고, 전체 매출액에서 이 경상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출액 경상이익률임)

- 대상 항목에 대한 3개 연도 자료를 입수하기가 어려운 경우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산정대상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함
- Price Underselling 방식은 한국의 경우 회계학적인 적정원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덤핑으로 인한 피해를 적절히 반영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음
- EU의 Price Underselling 방식을 따온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실제적인 적용에 있어서 EU가 덤핑이 없었을 상황을 목표가격의 초점으로 두어 이윤율 등의 적용에 있어 재량적인 판단의 범위가 넓음³⁴⁾
 - EU가 수출자별로 피해마진을 산정하고 효율적 생산비를 기준으로 적정 판매가격을 산출하는 등의 방식을 사용하는 데 비해, 우리나라는 수출자별로 피해마진을 산정하지는 않고 있음³⁵⁾
 - 무역위원회의 실제 적용사례를 보면 ‘미국, 일본, 대만산 유리장섬유 건(1999년)에서 수출자별로 산업피해 구제 수준을 산출하기도 한 사례는 있었음
 - 단일 피해마진을 산정하면 피해마진율은 결국 개별 피해마진보다 매우 낮아지는데, 개별 마진 산정의 경우 모델별 특징, 품질 차이 등을 과다하게 반영할 수 있으나 단일 피해마진의 경우 국내 산업 특징을 반영하지 못하게 되어 피해마진이 낮아짐³⁶⁾
 - 또한 실제 수입물품의 판매가가 가중 평균한 수입물품의 판매가격보다 높은 수출자의 경우 부담해야 할 피해마진보다 부담하는 피해마진이 큼
 - 단일 피해마진의 경우 조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은 수출자에게도 낮은 피해마진이 적용되면서 비협조를 조장할 수 있는 결과도 낳을 수 있음³⁷⁾
- 한국의 경우는 회계학적인 적정원가의 개념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윤율 추

34) 한정택·조연상, 「반덤핑제도의 최소부과원칙 적용방식 개선방안」, 『통상법률』, 법무부 국제법무과, 2012, p. 28.

35) 김광석, 「EU와 비교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반덤핑제도의 개선방향」,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6, p. 94.

36) 한정택·조연상, 「반덤핑제도의 최소부과원칙 적용방식 개선방안」, 『통상법률』, 법무부 국제법무과, 2012, p. 29.

37) 한정택·조연상, 「반덤핑제도의 최소부과원칙 적용방식 개선방안」, 『통상법률』, 법무부 국제법무과, 2012, p. 30.

정의 근거 시점이 덤핑 발생 이전 3년간 평균 수치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투명성에 치중하여 덤핑 피해를 측정하고 복구한다는 근본적인 목표와는 거리가 있다는 단점이 있음³⁸⁾
- 그러나 첫 번째 Price Cutting 방식을 적용했을 시 물품 저가 판매에 따라 이미 하락한 가격을 기초로 피해마진이 계산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

□ 국산 생산품 가격 인하방식은 국산품의 적정 판매가격과 국산품의 실제 판매가격 간의 차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식으로 덤핑 수입물품의 높은 브랜드 인지도 등으로 인하여 적절한 피해마진을 산정할 수 없을 시 사용함

- 산업피해 구제 수준 = $\frac{\text{국내 생산품 적정 판매가격} - \text{국내 생산품의 실제 판매가격}}{\text{국내 생산품의 실제 판매가격}} \times 100$
- 수 개의 대표모델을 사용할 경우에는 모델별 산업피해 구제율을 국내 생산품과 비교되는 수입품 모델별 수입량으로 가중 평균함
- 판매가 하락액은 국산품 적정 판매가격에서 국산품 실제 판매가격을 뺀 가격을 의미함
- 국내 생산품 적정 판매가격은 일반적으로 국내 생산품의 도매업자에 대한 공장 도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단위당 제조원가+단위당 판관비)÷(1-적정 영업이익률)로 산출함
- 이 방식의 경우 수입품과 국산품의 가격 차로만 피해마진을 산정했을 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여, 브랜드 인지도를 이용하여 국내 산업에 피해를 줄 시 피해마진을 계산할 수 있도록 근거가 되고 있음
 - 예를 들어 미국산 브랜드에 대한 물품의 충성도가 높다면 수입품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게 판매되기 때문에 Price Undercutting 방식이나 Price Underselling 방식 모두 피해마진이 낮게 계산됨

38) 한정택·조연상, 「반덤핑제도의 최소부과원칙 적용방식 개선방안」, 『통상법률』, 법무부 국제법무과, 2012, p. 28.

- 이 방식에 수출자의 모델별 차이 또는 개별적인 덤핑 정도가 반영될 수 있는 산정 방식이 개발될 필요성이 있음³⁹⁾

- 우리나라의 2016~2018년 산업피해 구제 산정 사례를 살펴보면 모두 두 번째 방법인 Price Underselling 방식에 따라 산업피해 구제 수준을 산정했음을 볼 수 있음
 - 산업피해 구제 수준은 개별 마진으로 산정되지 않고 단일의 마진으로 산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산업피해 구제 수준은 다음의 몇 가지 사례를 제외하고 10%대로 산정되어 있음
 - 대만, 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PET 필름에 89.1%, 중국의 아연도금철선 66.25%, 말레이시아의 합판에 45.78%, 중국 합판에 35.15%, 중국 플로트 판 유리에 36.01%, 중국, 싱가포르 및 일본의 초산에틸에 30.18%의 산업피해 구제 수준이 산정되었음
 - 2019년 무역위원회의 반덤핑 사례의 경우 1건은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없이 조사가 종결되었으며, 8건의 조사가 진행 중에 있음

39) 한정택·조연상, 「반덤핑제도의 최소부과원칙 적용방식 개선방안」, 『통상법률』, 법무부 국제법무과, 2012, p. 30.

〈표 III-1〉 2016~2018년 우리나라 산업피해 구제 산정 사례

국가	품목	조사번호	산업피해 구제 수준	산정방식
중국, 인도네시아 및 태국	폴리프로필렌연신 (OPP) 필름	구제 23-2018-4호	25.4%	2방법
인도	초산에틸	구제 23-2018-3호	19.84%	2방법
중국, 싱가포르 및 일본	초산에틸	구제 23-2018-2호	30.18%	2방법
대만, 이탈리아	스테인리스 스틸바	구제 23-2018-1호	19.64%	2방법
중국	플로트 판유리	구제 23-2017-6호	36.01%	2방법
태국, 말레이시아, 미국, 일본	에탄올아민	구제 23-2017-4호	21.79%	2방법
중국	아연도금철선	구제 23-2017-3호	66.25%	2방법
일본, 중국, 핀란드	도공(Coated) 인쇄용지	구제 23-2017-2호	16.23%	2방법
대만·태국 및 아랍에미리트연합산	PET 필름	구제 23-2017-1호	89.1%	2방법
베트남, 우크라이나 및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	구제 23-2016-5호	19.06%	2방법
중국	옴셋인쇄판	구제 23-2016-4호	10.21%	2방법
일본, 인도, 스페인	스테인리스 스틸바	구제 23-2016-3호	15.39%	2방법
중국	합판	구제 23-2016-2호	35.15%	2방법
말레이시아	합판	구제 23-2016-1호	45.78%	2방법

주: 조사 종결 사건 중 판결이 유효한 대상을 선정하였으며 심사 또는 조사 철회, 미종결된 사건은 제외하였음

자료: 무역위원회, <https://www.ktc.go.kr:20443/proInvestList.do>, 검색일자: 2020. 1. 13.

IV. 호주 및 EU의 최소부과원칙 관련 규정 및 적용 현황

1. 호주

가. 관련 규정

- 호주의 반덤핑 조사, 철회, 판정 등에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음
 - 「관세법」(Customs Act 1901 Vol.3 contains the majority of the Act's provisions relevant to anti-dumping)
 - 「관세법 중 덤핑 철회 지원 관련법」(Customs Act 1901-Instrument under Section 269(Lodging and withdrawing anti-dumping applications))
 - 「반덤핑법」(Customs Tariff(Anti-Dumping)) Act 1975
 - 「반덤핑법」(중간재심 관련)Customs Tariff(Anti-Dumping) Regulation 2013 (Methods of working out interim dumping duty)
 - 「관세규정」(Customs Regulation 2015)
 - 「관세규정」(국제의무 준수 관련)(Customs Regulation(International Obligations 2015))
 - 「관세행정법」(Customs Administration Act 1985)
- 관련 규정 중 「반덤핑법」(Customs Tariff Act 1975)의 제8조 5B, 5BA, 제9조의 5A, 제10조의 3C, 3D, 제11조의 5에서 최소부과원칙에 해당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해당 물품의 중립가격(Non-injuries price, 이하 중립가격)이 물품의 정상가격

(normal value of the goods, 이하 정상가격)보다 적은 것을 장관(minister)이 확인한다면 최소부과원칙에 따른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

- 「반덤핑법」에 따라 제8조(5B)에서는 수출가격(export price)과 최소부과원칙에 따라 정해진 반덤핑관세의 합이 중립가격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기타 제8조(5BA), 제10조(3C, 3D), 제11조(5)에서는 상계관세, 제3국 상계관세 등과 관련한 최소부과원칙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법에 따라 다양한 국가에서 수입된 물품에 대해 조사를 실시할 시 해당 장관은 GATT 1994 반덤핑협정 제9.2조 및 상계관세 및 보조금에 관한 협정 제19.3조⁴⁰⁾에 따라 비차별적으로 고려해야 함

□ 호주 산업부장관은 아래의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최소부과원칙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음

- 269TAC(1)에 따른 정상가격을 269TAC(2)(a)(ii)에 따른 특정시장상황 때문에 확신할 수 없는 경우
- 관련 호주 산업이 최소 2개의 중소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 상계관세 및 보조금 협정 제25조에 따른 통보기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

□ 반덤핑법에서는 최소부과원칙에 대해 고려할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피해 산정 내용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

□ 최소부과원칙은 호주의 『호주 반덤핑 및 보조금 매뉴얼』(Dumping and Subsidy manual 2018.11) 제24장에서(The Lesser Duty Rule and Non-Injurious) 최소부과원칙과 중립가격 산정 및 적용 예외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40) 특정 상품에 대하여 상계관세가 부과될 때, 이러한 상계관세는 보조금을 받고 피해를 야기하는 것으로 판정이 내려진 모든 원천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하여 사안별로 적절한 금액으로 무차별적으로 부과된다. 단 당해 보조금 지급을 포기하거나 이 협정의 조건에 따른 약속을 수락한 출처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협조 거부 이외의 사유로 실제로 조사를 받지 아니하였으나 자신의 수출품이 확정 상계관세의 부과 대상이 된 수출자는 조사 당국이 자신에 대한 개별적인 상계관세율을 신속하게 확정하기 위하여 신속한 검토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나. 국내 산업피해 산정

- 호주 반덤핑위원회는 중립가격(Non-injurious price, 이하 NIP)을 억제받지 않은 가격(Unsuppressed Selling price, 이하 USP)으로부터 산정하도록 함
 - NIP 대한 산정 방식은 관련 법에서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반덤핑매뉴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음
 - 조사과정에서 NIP를 수출가격과 비교하여 수출가격이 NIP보다 높을 경우 호주 반덤핑위원회는 물질적인 피해가 덤핑으로 인하여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함
 - USP는 덤핑이나 보조금에 의한 수입에 영향을 받지 않은 호주 산업이 시장에서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판매가격을 의미함(industry selling prices at a time unaffected by dumping)
 - 만약 USP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가격은 국내 산업의 물품 생산 및 판매에 소요된 가격 그리고 이윤을 더한 가격에 근거하여 구성 판매가격을 산정하도록 함
(constructed industry prices-industry CTMS plus an amount for profit)
- 구성 판매가격=생산원가+판매관리비+이윤
 - 만약 위의 두 방법을 모두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덤핑 및 보조금 없이 다른 형태의 호주에서 판매되는 가격, 즉 덤핑 외 수입가격에 근거하여 산정하도록 함
(selling prices of un-dumped imports)
- USP는 호주 산업이 특정한 기간 동안 덤핑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않았던 가격을 가중 평균하여 산정함
 - 최소 1년을 기준으로 하며 계절적 영향 또는 주기적인 트렌드를 반영함
 - 덤핑 또는 보조금의 영향을 받지 않은 적당한 기간이 있다면 사용되는 가격에 대한 자료는 5년 이내로 한정함
 - 5년 전의 자료일지라도 과거 자료를 사용하여 USP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입증되고 관련 자료를 검증할 수 있는 경우 5년 전의 판매자료를 기초로 SP를 산정하기도 함

- 만약 5년 이상 된 자료를 사용해야 한다면 호주 반덤핑위원회는 인덱싱에 따라 오래된 가격을 업데이트하거나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합당하게 산정해야 함
 - 오래된 자료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호주 산업의 판매가격이 피해 분석 기간을 초과하여 덤핑으로 영향을 받은 경우
 - 호주 산업 또는 시장구조가 현저하게 변화한 것으로 인하여 호주 산업의 판매 가격이 결과적으로 영향을 받았음을 예측할 수 있는 경우
 - 가격이 비합리적으로 오래된 경우(unreasonably dated)
 - 가격 산정 시 고려할 수 있는 이상의 접근 방식은 사례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음
- 호주의 USP는 한국의 Price Undercutting 방식과 유사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나 전제 조건이 근본적으로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음⁴¹⁾
- 한국의 Price Undercutting은 덤핑으로 인해 국산품의 가격이 변화하지 않았다고 가정하고 국산품 및 수입품과의 가격 차이를 산정하나 호주의 USP는 덤핑으로 인해 억제된 가격을 통해 그 효과를 산정하고자 함
 - 따라서 호주의 USP는 덤핑이 발생하지 않았던 시기가 중요하나 한국은 시기가 관련이 없음
- 국내 시장 또는 산업의 가격이 덤핑의 영향으로 인하여 USP 도출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국내 산업의 제조 및 판매원가(Cost To Make and Sell, 이하 CTMS)를 가중 평균하여 산정하도록 함
- 최소 1년을 기준으로 하며 계절적 영향 또는 주기적인 트렌드를 반영함
- CTMS에 적용되는 이율은 최근의 덤핑으로 인한 영향을 받지 않은 1년 동안의 호주 산업의 가중 평균이율 또는 호주 산업의 유사한 물품에서 발생한 실제 이율이 적용됨

41) 한정택·조연상, 「반덤핑제도의 최소부과원칙 적용방식 개선방안」, 『통상법률』, 법무부 국제법무과, 2012, p. 28.

- 만약 이러한 이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호주 반덤핑위원회는 독립된 평가기관의 투자 수익률 또는 이율 조사 등의 자료를 사용할 수 있음
- CTMS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
 - 오랜 기간 동안의 이율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
 - 산업적 CTMS 데이터가 구성적 접근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국내 산업의 원가(CTMS)가 구성 판매가격을 산정하기 부적절한 경우)
 - 결과가 USP의 합리적인 레벨이 아닐 경우(오랜 기간 동안 취득한 가격과 반대되는 결과로서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
- 호주 반덤핑위원회는 다양한 호주 국내 생산자의 USP를 결정해야 하는 경우, 이 상에서 언급한 일반적인 가중 평균 이외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경우도 발생함
 - 대표 그룹의 원가(예를 들어 가장 큰 거래 또는 대표 거래) 또는 가장 효과적인 제조업체 또는 플랜트의 원가를 사용할 수 있음
- 마지막 방법으로 조사 대상기업 또는 조사 대상국 중 특정 업체나 특정 국가가 덤핑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고 해당 업체 또는 국가가 충분한 물량의 수출을 하고 있을 시 덤핑 외 수입가격을 적용함
 - 물론 조사 대상국 이외의 제3국 수입 자료를 사용할 시에는 덤핑의 영향 여부를 검토할 때 수입물량에 대해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음

다. 최소부과원칙 적용 현황

- 호주는 대부분의 경우 반덤핑매뉴얼에서 규정하고 있는 Domestic sales price와 CTMS를 사용하고 있으나, 매뉴얼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수출자의 정상가격을 NIP 도출에 사용하는 등 사례에 따라 재량적으로 피해를 산정하고 있음

- 2018년 그리스, 인도네시아, 스페인, 태국, 대만에서 호주로 수입되는 철강 강화바(steel reinforcing bar)에 Domestic sales price, CTMS, undumped price(수입가격 + 덤핑마진)를 모두 적용하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정상가격(Normal Value)을 사용하였음
 - 사용 이유에 대해 덤핑에 영향을 받지 않은 기간 동안 호주 산업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NIP를 결정하는 것은 철근과 관련한 이전의 덤핑 사례 및 이미 호주 시장이 덤핑의 영향을 받았다는 조사에서 발견한 결과로 인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함
 - CTMS는 과거(historical)의 데이터가 적합하지 않아 이에 기반하여 이윤을 산정하는 것이 본 사례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음
 - 마지막으로 덤핑으로 영향을 받지 않은 일반적인 시장의 가격인 undumped price를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이 방법으로 계산한 결과가 덤핑의 피해를 구제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수출자의 정상가격(Normal Value)을 사용하였음
 - One steel 업체는 시장의 다양한 가격에 영향을 받고 있어 조사 대상이 아니며 수입량이 적은 국가에서의 수입가격이 더 낮음에도 불구하고 덤핑된 수입품이 One Steel에 피해를 입혔음을 파악하였음
- 2017년 인도에서 수입된 용융아연도금강판(Zinc Coated (Galvanized) Steel)의 경우 Domestic sales price, CTMS 두 가지 방법 모두 다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undumped price(수입가격+덤핑마진)를 적용하였음
 - 덤핑에 영향을 받지 않은 기간 동안 호주 산업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NIP를 결정하는 것은 용융아연도금강판과 관련된 기존의 몇몇 덤핑사례와 우회덤핑 적용으로 인하여 불가능하였음
 - CTMS는 오래된 과거(historical)의 데이터에 기반하여 이윤을 산정하는 것이 본 사례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음
 - 마지막 덤핑으로 영향을 받지 않은 일반적인 시장의 가격을 사용하려고 하였으

나, 이 방법으로 계산한 결과가 덤핑의 피해를 구제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수입가격과 덤핑마진을 더한 undumped price로 USP를 산정하였음

- 말레이시아 및 베트남 알루미늄 압축성형(Aluminium Extrusions) 조사 건에서는 undumped price(수입가격+덤핑마진)를 적용하였으나, 그 이유에 대해서는 상세히 기술하지 않았음
- WTO 규정상 최소부과원칙이 의무가 아니므로 가격 선정의 이유 또한 의무적인 설명의 이유가 없기 때문에 국제 규범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려움
 - 호주 국내 산업의 판매가격이 조사 대상국가와 중국의 덤핑수입으로 인하여 적용이 불가능하였음
 - 본 건에서 『호주 반덤핑 및 보조금 매뉴얼』에서 국내 산업의 판매가격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CTMS를 적용하지 않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undumped price의 적용이 합리적이라고만 언급하였음
 - 본 건에서는 개정된 규정 중 중소기업 예외 규정과 관련하여 업체의 여부 확인 요청이 있었으나 관련 4개 업체 중 한 곳만 중소기업으로 판정되었으며, 추가 확인을 요청한 업체의 경우도 중소기업으로 판정되지 못했음

〈표 IV-1〉 2017~2019년 호주의 최소부과원칙 적용 현황

연도	USP 적용	수입대상	수입국	최소부과원칙 예외 규정 적용 여부	최소부과원칙 적용 여부	비고
2019	CTMS	철도차량용 차륜 (Railway wheels)	중국, 프랑스	NO	NO	EPR 466
	Domestic Sales Price	질산암모늄 (Ammonium nitrate)	중국, 태국, 스웨덴	NO	YES	EPR 477
	CTMS	PVC 플랫케이블 (PVC flat electric cables)	중국	NO	YES	EPR 469

〈표 IV-1〉의 계속

연도	USP 적용	수입대상	수입국	최소부과원칙 예외 규정 적용 여부	최소부과원칙 적용여부	비고
	CTMS	팔레트레크 (Steel pallet racking)	중국, 말레이시아 (financial years 2012/13- 2014/15)	YES (특정시장 상황)	NO	EPR 441
	CTMS	A4 용지	오스트리아, 핀란드, 한국, 러시아, 슬로바키아	NO	NO	EPR 463
	Domestic Sales Price	원형 합금바 (Alloy round steel bar)	중국	YES (특정시장 상황)	NO	EPR 384
2018	Normal Value	철강강화바 (Steel reinforcing bar)	그리스, 인도네시아, 스페인, 태국, 대만	NO	NO	EPR 418
2017	Domestic Sales Price	와이어 로프 (Wire ropes)	남아공	NO	YES	EPR 401
	un dumped Price	용융아연도금강판 (Zinc Coated (Galvanized) Steel)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 (인도는 상계관세에 해당)	NO	NO	EPR 370
	Domestic Sales Price	냉각수처리 조절장치 (Cooling tower water treatment controllers)	미국	NO	NO	EPR 377
	un dumped price	알루미늄압축성형 (Aluminium Extrusions)	말레이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는 상계관세도 해당)	NO	NO	EPR 362

〈표 IV-1〉의 계속

연도	USP 적용	수입대상	수입국	최소부과원칙 예외규정 적용 여부	최소부과원칙 적용 여부	비고
	Domestic Sales Price	A4용지	브라질,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	YES (특정시장 상황)- 인도네시아	NO	EPR 341
	Domestic Sales Price	재밀봉 가능한 캔 양단마개 (Resealable can end closures)	인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NO	YES	EPR 350

- 주: 1. 철회되었거나 조사 종료사례 제외
 2. 최소부과원칙의 적용 여부는 중립가격(Non-injurious price)이 정상가격(Normal Value)보다
 높아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조사이며, 관세율의 적용 여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3. 〈표 IV-1〉의 사례는 개정된 최소부과원칙이 적용된 2017년부터 조사가 개시되었으나, 판정이
 내려진 사례를 위주로 조사하였음

자료: 호주 과학혁신산업부, https://www.industry.gov.au/regulations-and-standards/anti-dumping-and-countervailing-system/anti-dumping-commission-archive-cases?field_adc_commodities_tid=All&field_adc_case_type_tid=2004&field_adc_country_tid=All&combine=&search_api_views_fulltext=&order=field_last_updated&sort=asc, 검색일자: 2020. 1. 20.

라. 최소부과원칙 개정 규정⁴²⁾

- 2014년 1월 1일 호주는 과학혁신산업부 장관이 의무적으로 고려해야 했던 최소 부
과원칙에 대해 예외적인 사항을 두는 방향으로 반덤핑매뉴얼의 규정을 개정하였음
- 호주의 경우 2005년 중국에 대해 시장경제 지위를 인정하였음에도 특정시장에 대한
최소부과원칙 예외 규정을 적용하여 중국에 보다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42) 호주 반덤핑위원회, 『호주반덤핑매뉴얼(Dumping and Subsidy Manual』, 2018. 11, Chapter 8
~Chapter 24.

- 「관세법」 Subsection 269TG에 따라 반덤핑 조사는 수출국의 특정시장상황에 따라 국내 판매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최소부과원칙을 배제한다고 규정함
 - 그러나 본 규정에서는 특정시장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고 있음
 - 단 정상적인 시장 상황에서의 공정한 가격을 반영하지 못하여 정상적인 가격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① 269TAC(1)에서는 가격이 인위적으로 지나치게 낮은 경우 ② 혹은 시장 상황으로 인하여 수출국 내의 물품 소비가격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음

- 반덤핑매뉴얼에 따라 정부가 물품의 가격이나 물품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인위적으로 가격이 낮은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조사 시 정부가 국내 시장에 개입하여 물질적으로 왜곡된 경쟁적 환경 (materially distorted competitive conditions)을 조성하였고, 이렇게 조성된 환경으로 인하여 수출국 국내 가격이 인위적으로 낮은 경우
 -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한 사례로 국영기업이 시장을 독점하여 가격이 인위적으로 낮아진 경우, 혹은 정부가 개입하여 생산가가 왜곡되는 경우를 들고 있음
 - 또한 정상적인 경쟁적 시장에서 정해질 수 있었던 가격과 상당히 다른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

- Subsection 269TAC(1)에 따라 고려될 수 있는 기타 시장 상황은 다음과 같음
 - 수출국 국내 시장의 판매물품이 수출될 물품과 디자인, 특징 면에서 매우 달라 가격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
 - 하나의 업체가 호주 시장의 5%를 담당하고 있는 경우
 - 물물교환이 일어나는 경우
 - 약속에 대한 상업적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 관련 산업을 구성하는 기업 중 둘 혹은 둘 이상이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임을 확인받을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증명하였을 시 과학혁신산업부 장관은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최소부과원칙 적용을 배제할 수 있음

- 중소기업은 생산기업 또는 제조기업으로 풀타임 근무자가 200명 혹은 그보다 더 적은 수의 인원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해당 기업에서 중소기업 확인에 대한 요청이 있을 시 호주 반덤핑위원회에서 그 사실을 조사함
-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으로서 관계 법인이 아니어야 함(independently operated and which is not a related body corporate)

2. EU

가. 관련 규정

- EU는 최소부과원칙을 가장 오래전부터 적용해 왔으며 이 제도를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⁴³⁾
- EU는 1995년 규정 Council Regulation(EC)384/96에서 처음으로 반덤핑규정을 도입하였으며, 본 규정 제7조(2) 및 제9조(4)에서 최소부과원칙을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잠정 관세의 부과가 덤핑마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역내 산업의 피해를 제거하기에 마진보다 낮은 관세가 적정하다면, 그 세율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EU의 반덤핑 최소부과원칙과 관련한 최신 규정은 Regulation(EU) 2016/1036으로, 제7조(2) 및 제9조(4)에서 규정하고 있음
 - 제7조(2) 및 제9조(4)에서는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시 덤핑마진보다 더 낮은 수준의 관세가 연합 내의 피해를 충분히 제거할 수 있다면, 그 관세의 수준보다 높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제9조(4)에서는 반덤핑관세 부과 시에 덤핑 및 피해가 존재하고 두 가지

43) 홍순파, 『산업피해 구제 수준에 대한 검토』, 무역구제논단, 2005. 6, p. 5.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을지라도 제21조에 따른 공공의 이익에 대한 검증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다양한 EU 회원국들로 이루어진 공동체의 특성상 반덤핑 조치에 대한 혜택을 받는 국가도 있겠지만, 이로 인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다른 구성원들을 고려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음⁴⁴⁾
- 본 규정에 따라 EU에서는 최소부과원칙이 법 규정상 의무화되어 있음

□ 그러나 본 규정에서는 피해마진 산정의 기준이나 방식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있어 피해를 제거하기에 충분하다고 하는 수준을 결정할 시 호주 반덤핑위원회의 재량에 따라 이루어짐

- 이는 피해마진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이 공개될 시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⁴⁵⁾

나. 국내 산업피해 산정

□ EU의 경우 호주와 같은 지침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과거의 사례에서 제시된 피해 산정 방법을 통해 사용하는 방법을 추정해 볼 수 있음

□ 과거의 사례에서 EU는 공동체산업이 생산하는 동종의 물품 판매가격과 비교하거나 또는 목표가격(Target Price)과 비교하여 피해마진을 산정하였음⁴⁶⁾

- 일반적으로 동종의 물품 판매가격과 비교하는 전자를 Undercutting 방식이라고 하고, 목표가격과 비교하는 방법인 후자의 방식을 Underselling이라고 함
- EU는 피해마진 산정 시 사안에 따라서 개별 기업별로 계산하거나(개별 피해마

44) 김세환, 「EU 반덤핑법상 최소부과원칙에 대한 연구」, 『유럽헌법연구』 제27호, 2018, p. 33.

45) 안덕근, 『산업피해 구제 수준의 합리적 운용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2009, p. 8.

46) 표인수·유세열, 『무역구제제도의 활성화와 우회덤핑 및 최소부과원칙(lesser-duty rule)의 재검토』, 한국국제통상학회, 2018, p. 82.

진, Individual injury margin) 또는 전체 대상기업에 대하여 단일한 피해마진 (단일 피해마진, Global injury margin)을 산정함

- 때에 따라서는 두 방식이 혼합되어 개별 및 단일 피해마진이 같이 적용(혼합비교 방식, semi-individual injury margin)되기도 함
- EU는 일반적으로 개별 피해 방식과 혼합비교 방식을 사용하였으며, 단일피해 방식 단독 적용 사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임

□ Price Undercutting은 국내 제품의 실제 판매가격과 덤핑된 수입물품 판매가격의 차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식으로, 덤핑된 수입물품에 의해 국내 제품의 판매가격의 상승이 억제 혹은 하락하지 않은 경우 사용함

- 산업피해 구제 수준 = $\frac{\text{국내 생산품 실제 판매가격} - \text{수입품 판매가격}}{\text{CIF 수입가격}} \times 100$
- 이 방식은 목표가격을 국산품의 실제 판매가격과 동일하게 파악한 것으로, 피해마진만큼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경우 덤핑 수입물품의 재판매가격은 국산품의 실제 판매가격과 동일한 수준이 됨으로써 Price Underselling 방식보다 구제수준이 낮아짐

□ Price Underselling 방식은 국내 제품의 적정 판매가격과 덤핑 수입물품의 판매가격의 차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식으로, 덤핑된 수입물품의 판매가격에 의해 국산품 판매가격의 상승이 억제되거나 국내 제품 판매가격이 하락했을 시 적용함⁴⁷⁾

- 국내 제품 판매가격의 상승이 억제 또는 하락하여 국내 제품의 실제 판매가격이 덤핑 수입물품에 의해 이미 영향을 받은 상태이므로 새롭게 적정 판매가격을 산출하여 피해마진을 산정함
- 산업피해 구제 수준 = $\frac{\text{국내 생산품 적정 판매가격} - \text{수입품 판매가격}}{\text{CIF 수입가격}} \times 100$

47) 안덕근, 『산업피해 구제 수준의 합리적 운용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2009, pp. 8~9.

- EU는 국내 동종물품의 제조원가에 대해서 전체 또는 표본으로 선정된 국내 산업의 가중 평균 제조원가, 가장 효율적인 국내 산업의 제조원가 또는 대표적인 국내 산업의 제조원가를 사용하고 있음
 - EU는 국내 제품의 적정 판매가격을 목표가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 추정치 기본적인 내용을 국내 생산자의 비용과 이윤에서 찾으려 함
 - 국내 동종물품 목표가격 = 국내 산업의 가중 평균 제조원가 + 국내 산업의 판매 및 일반관리비 + 목표이윤(Target Profit)
 - 이 방식을 사용하여 피해마진만큼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경우 덤핑 수입물품의 재판매가격은 국산품의 적정 판매가격과 동일한 수준이 됨
- 그 밖에 국내 제품의 적정 판매가격과 국내 제품 실제 판매가격의 차이를 기준으로 피해마진을 산정하는 방법을 도입한 사례가 있었음
- 이 방식은 덤핑 수입물품이 덤핑에도 불구하고 국산품의 적정 판매가격보다 높게 판매되는 경우에도, 국내 산업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에 근거한 산정 방식임
 - Price Undercutting 또는 Price Underselling 방식에 의하면 피해마진은 0으로 산정됨
 - 이 방식의 경우 덤핑된 수입물품이 고가임에도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 국내 제품과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관계가 되어 산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 방식으로 볼 수 있음
 - 가격조정 사항으로 물리적 특성, 거래 단계 외에 브랜드 인지도 또한 고려하여 덤핑된 수입물품의 재판매가격을 국내 제품의 실제 판매가격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마지막으로 판매 상실분을 고려한 방식은 시장점유율이 감소하면서 발생한 매출감소효과를 수입제품의 가격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피해마진을 산정하여 상실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도록 함

- 본 방식은 국내 산업이 완전하게 가동되는 경우의 전망치를 기준으로 목표시장 점유율 및 목표이윤을 산정하여 전체적 이익 감소를 구한 후 피해를 제거하기 위한 가격 인상폭인 피해마진을 산정함
- 그리고 각 수출자의 가격뿐 아니라 수출 물량 또한 고려하여 피해마진을 각 수출자에게 배분함
- 단 완전 가동에 따른 생산량 증가를 고려하지 않아 국내 산업을 과하게 보호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음
- 또한 조사기간 동안 시장점유율이 적게 증가하였음에도 기존에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이는 수출자에게 높은 피해마진이 부과되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초반 높은 가격의 일본산 가전제품에 대해 예외적으로 사용된 이후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 있음

다. 최소부과원칙 적용 현황

- EU는 국가별, 업체별로 피해마진을 산정하고 목표이윤을 적정 판매가격에 포함시키는 Underselling 방식을 주로 적용하기 때문에 하여 단일 피해마진을 산정하는 우리나라에 비해 피해마진율이 높은 편임
 - EU집행위원회는 모든 사례에 비교 가능 수입품 모델의 조정된 가격과 EU 동종 물품 모델의 가중 평균 중립가격 간의 차이를 비교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음
 - 2018년에서 2020년 사이 반덤핑 관련 사례를 살펴보면, EU의 가장 많은 반덤핑 제소국은 중국으로, 주 제소품목은 철강임
- 2019년 철강바퀴 사례에서 EU는 중국에 대해 개정된 규정의 원자재 왜곡 여부를 적용하여 최소부과원칙을 배제하는 것을 고려하지는 않았으나, 목표이윤 산정에 관한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여 6%를 반영하고 있음
 - 러시아에서 EU로 수입된 비료 원료의 사례에서는 최소부과원칙 개정 규정이 적용되어 목표이윤 6%를 반영하였음

- 2018년 규정 개정 전의 사례에서는 6%의 목표이익보다 낮은 목표이익(4.3%, 5.3%)이 적용되기도 하였음

〈표 IV-2〉 2018~2020년 EU의 최소부과원칙 적용 현황

연도	계산 방식	수입대상	수입국	피해 마진	목표이익 (Target Profit)	최소부과원칙 개정 규정 적용 여부	비고
2020	N/A	스테인리스 철강 압연 제품	중국, 인도네시아, 대만	N/A	N/A	YES (최소부과 원칙 적용 배제 고려 중)	AD658
2019	N/A	핀 및 스테이플	중국	N/A	N/A	NO	AD663
	N/A	감열지	한국	N/A	N/A	NO	AD659
	N/A	섬유제품 (Glass fibre reinforcements)	이집트, 바레인	N/A	N/A	NO	AD655
	N/A	폴리비닐 알코올	중국	N/A	N/A	NO	AD654
	N/A	섬유 (Glass fibre fabrics)	중국, 이집트	N/A	N/A	NO	AD653
	Under selling	철강바퀴 (steel road wheels)	중국	50.3 -66.4	6%	YES	AD652
	Under selling	비료원료 (Urea and ammonium nitrate)	러시아, 트리니다드 토바고, 미국	16.2 -31.9	6%	YES	AD649
2018	Under selling	전기자전거	중국	21.8 -77.6	4.3%	NO	AD643
	Under selling	버스 및 대형 트럭 타이어 (Tyres for buses or lorries)	중국	23.41 -55.7	17.9/6.1%	NO	AD640

〈표 IV-2〉의 계속

연도	계산 방식	수입대상	수입국	피해 마진	목표이윤 (Target Profit)	최소부과원칙 개정 규정 적용 여부	비고
	Under selling	내식강 (corrosion resistant steels)	중국	17.2 -27.9	7.4%	NO	AD639
	Under selling	주철 (cast iron articles)	중국	63.5 -72.8	5.3%	NO	AD637

주: 1. 철회되었거나 조사 종료 사례 제외
 2. EU의 경우 2018년의 개정 규정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2020년까지 조사가 개시되었거나 조사가 진행 중인 사례를 모두 포함하였음
 3. 〈표 IV-2〉의 사례는 개정된 최소부과원칙이 적용된 2018년부터 조사가 개시되었거나 판정이 내려진 사례를 위주로 조사하였음

자료: EU집행위원회, <https://trade.ec.europa.eu/tdi/notices.cfm?year=2019>상의 판정문, 조사 개시문을 바탕으로 필자 작성, 검색일자: 2020. 2. 4.

라. 최소부과원칙 개정 규정⁴⁸⁾

- 1994년 WTO 출범에 따라 EU의 무역구제제도가 개편된 이래로 전면적인 「반덤핑법」 개정이 두 번 있었음
 - 2017년 12월 반덤핑 계산 방식에 대해 개정된 규정 Regulation(EU) 2017/2321과 2018년 7월 무역구제제도의 현대화에 대한 개정된 규정 Regulation(EU) 2018/825임
- 특히 반덤핑 특정시장상황에 반영된 규정(Regulation(EU) 2017/2321)의 개정 내용을 피해마진 산정 시 반영하기 위해 2018년 Regulation(EU) 2018/825에 최소부과원칙 예외 규정을 반영하였음

48) Regulation(EU) 2018/825.

- 회원국 간 규정 개정 시 가장 큰 이점을 보인 쟁점이 최소부과원칙(Lesser Duty Rule)이었음
 - 일부 회원국에서는 최소부과원칙을 없애고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여 역내 산업보호를 위한 방어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으며 북유럽 국가 등에서는 이를 반대하며 자유무역 확대를 주장하는 등 입장이 대립되어 왔음⁴⁹⁾
 - 일례로 중국산 냉연간판에 대해 미국의 경우 최소부과원칙을 적용하지 않아 최대 266%의 관세를 부과하였으나 EU는 13%만 부과하였음
 - 2013년 EU집행위원회는 특정 원자재에 대해 최소부과원칙의 적용을 제외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네덜란드, 영국 등 14개 회원국이 이에 반대하여 결국 2014년 무역구제 조치 개선안에 대한 협의가 중단되었었음
 - 본 규정은 2018년 1월 법안이 통과되었으며 6월 8일자로 유럽 의회의 승인에 따라 발효되어 적용되고 있음
- EU의 최신 개정 규정인 Regulation(EU) 2018/825의 주요 내용은 인위적으로 낮게 산정된 가격으로 왜곡된 원자재와 에너지가 물품 전체의 생산비용에서 17% 이상을 차지할 경우 최소부과원칙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규정임
- 또한 피해마진을 산정할 시 필요로 하는 목표이윤이 6%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전문(recital) (8)항에서는 제3국에서 자국의 하방(downstream) 사용자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원자재를 보유하는 행위로 가격 왜곡이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개정 사유를 설명하고 있음
- 원자재 보유를 위하여 제3국에서는 원자재에 수출세를 부과하거나 이중가격제로 개입하는 등의 행위를 취하고 있음

49) KOTRA,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5/globalBbsDataView.do?setIdx=244&dataIdx=168847>, 검색일자: 2020. 2. 3.

- 이러한 개입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무역 왜곡이 일어나며 따라서 결과적으로 원자재의 가격은 정상적인 시장에서의 수요 및 공급에 따른 가격을 반영하지 못하게 됨
 - 연합의 생산자들은 덤핑뿐 아니라 제3국의 하방 사용자에게 비해서도 무역 왜곡에 의해 고통받게 됨
 - 따라서 무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부과할 관세율의 수준을 정할 때에도 무역 왜곡을 고려해야 함
- 이 규정을 통해 삽입된 제7조(2a)에 따라 원자재 왜곡이 발생한 경우 EU집행위원회는 제7조(2b)에 따른 공공의 이익에 합치하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실시해야 함
- 또한 제7조(2)를 적용하여 제7조에 따라 부과될 관세의 수준을 정할 시, 제21조에 따라 공공의 이익을 심사해야 함
- Regulation(EU) 2018/825는 기존 반덤핑규정(Regulation(EU) 2016/1036의 제7조에 (2a), (2b), (2c), (2d)를 새로 삽입하는 형식으로 개정되었음
- 기존 규정의 제7조(2)와 제9조(4)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새로운 규정을 삽입한 형태이며, 제9조(4) 또한 바뀐 규정에 따라(accordingly) 적용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반덤핑관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관세는 피해를 제거하기에 충분하되 덤핑마진보다 높지 않아야 하며 물품생산에 사용된 원자재의 왜곡이 있었는지 검토해야 함⁵⁰⁾
- 국제 시장을 대표하는 가격과 비교하여 원자재 가격이 현저히 낮은 경우, 원자재에 왜곡이 있었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음⁵¹⁾
- 이중가격제, 라이선스 조건, 수출세, 수출과징금, 수출쿼터, 수출금지, 수출 관련 세금, 수출최소가격, VAT 철회 또는 감소, 수출자를 위한 통관절차 제한, 자격

50) Regulation(EU) 2018/825 Article 2(a).

51) Regulation(EU) 2018/825 Article 2(a).

있는 수출자 리스트, 국내 시장 의무, 캡티브 광산업(captive mining)

- EU집행위원회는 수출에 대한 왜곡 조치가 OECD의 산업 원자재에 관한 수출제한 목록 또는 기타 OECD의 데이터베이스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며, 만약 본 목록이 변경되는 경우 조치 또한 함께 변경될 것이라고 규정함
 - EU집행위원회가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면 모든 원자재 왜곡에 대해 조사할 권한이 있음
 - 최소부과원칙 적용 배제를 검토할 경우, 문제가 되는 원자재가 에너지를 포함하여 가공되었거나 가공되지 않았더라도 조사대상 품목을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의 17%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해야 함
 - 즉 왜곡된 원자재 및 에너지가 전체 생산비용의 17%보다 많다면 최소부과원칙의 적용이 배제되고, 덤핑마진을 그대로 부과하게 됨
 - 또한 이러한 계산 시 왜곡되지 않은 원자재의 가격은 국제 시장의 대표가격(representative international price)을 사용해야 함
- 제7조(2b)에 따라 제출된 모든 정보에 근거하여 EU집행위원회가 제7조(2a)에 따라 최소부과 요건의 적용을 배제하고 잠정 반덤핑관세를 결정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따른다고 결정될 시, 제7조(2)에 따른 최소부과 요건은 적용되지 않음⁵²⁾
- EU집행위원회는 제7조(2) 또는 제7조(2a)에의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로부터 적극적으로 정보를 구해야 함
 - 이를 위해 EU집행위원회는 수출국의 유희생산능력,⁵³⁾ 원자재 경쟁 및 EU회사의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과 같은 모든 관련 정보를 조사해야 함
 - 관련 조사에 대해 협력하지 않을 시 EU집행위원회는 제7조(2a)를 적용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따른 것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음

52) Regulation(EU) 2018/825 Article 2(b).

53)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추가로 생산할 수 있는 추가생산 여력을 뜻하며, 인플레이션 하락 압력이 중단되는 시점까지 추가로 생산할 수 있는 산출량을 의미함

- 제7조(2c)에 따라 피해마진이 목표 가격에 기초하여 산정될 시 목표이윤은 6%보다 낮게 산정될 수 없음⁵⁴⁾
 - 목표이윤은 조사 대상 국가로부터 수입이 증가하기 전의 이윤율 수준, 일반적인 경쟁적인 조건하에서 기대할 수 있는 이윤 수준, 모든 투입 비용과 투자 비용, 연구와 개발 그리고 혁신을 포괄할 수 있는(to cover) 이윤율의 수준 등을 모두 고려하였을 때 그 어떤 상황에도 6% 이상으로 적용되어야 함
- 또한 목표가격을 산정할 시 제7조(2d)에 따라 연합의 실제 생산 비용에 EU가 당사자인 다자간 환경 협정, 본 규정의 부속서 Ia에 열거되어 있는 ILO(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핵심 협약⁵⁵⁾에 따라 초래되는 비용을 반영해야 함
 - 또한 이 조약 제7조(2c)에서 적용되지 못한 협약을 준수하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과 향후 제11조(2)에 따라 마진을 산정하는 기간 동안 연합 산업에 발생할 피해 비용 또한 고려 대상이 되어야 함
 - 목표가격은 EU 역내 생산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가격을 의미하며, 이 가격은 산정 시 전체 생산 비용 및 목표이윤에 근거하게 됨
 - 본 규정의 예 중 하나는 배출거래시스템(Emission Trading System)⁵⁶⁾으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목표가격에 포함하는 것인데, 실제 러시아에서 EU로 수입되는 비료원료 사례에서 목표가격을 결정할 시 EU 배출거래시스템 준수 비용이 포함되었음

54) Regulation(EU) 2018/825 Article 2(c).

55) ILO의 8가지 핵심 협약은 제29호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 제87조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협약,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 교섭권 협약, 제100호 남녀 동등보수 협약, 제105호 강제노동 철폐에 대한 협약, 제111호 고용 직업상 차별금지협약, 제138호 취업상 최저연령협약, 제182호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철폐협약임

56) 배출권 거래제도는 환경 혹은 자원과 관련된 허가(권리)에 대한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로, 한 단위의 배출권은 일정량의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허가를 의미하며, 배출업체는 배출권 보유량 이하로 배출량을 줄이거나 다른 업체로부터 부족한 양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구입할 수 있고, 배출량을 초과하는 양의 배출권을 보유하는 업체는 잉여배출권을 판매할 수 있음

V. 호주 및 EU의 최소부과원칙 개정 규정 적용 사례

1. 호주

- 호주의 최소부과원칙 개정 규정은 2017년 인도네시아에서 호주로 수입되는 A4용지에 대해 처음 적용된 이래, 2019년까지 중국에서 호주로 수입되는 원형 합금바 및 팔레트레크에 대해 각각 적용되었음
- 세 가지 사례 모두 특정시장상황(a particular market situation) 규정이 적용되어 최소부과원칙의 적용이 배제되었음
- 현재까지 중소기업이 2개 이상 존재하여 최소부과원칙을 배제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조사됨

가. 중국 및 말레이시아 팔레트레크 사례(EPR 441)⁵⁷⁾

- 호주 과학혁신산업부 장관은 2018년 6월 19일부터 호주 국내로 수입되는 중국, 말레이시아 철강 팔레트레크(Pallet racking)에 대해 잠정 반덤핑관세 부과를 확정하였음
- 특정한 시장 상황으로 인하여 「관세법」 Subsection 269TAC(1)에 따른 중립가격을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최소부과원칙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였음

57) 호주 과학혁신산업부, *Anti-Dumping Commission Final Report* No. 441, https://www.industry.gov.au/sites/default/files/adc/public-record/441-126_final_report_-_rep_441.pdf, 검색일자: 2020. 1. 15.

- 호주 반덤핑위원회는 산업부장관이 말레이시아 및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철강 팔레트레크에 최소부과 요건의 적용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였음
- 호주 반덤핑위원회는 본 철강 팔레트레크 생산 기업의 중소기업 여부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총 6개의 기업 중 한 개의 기업을 제외한 5개가 모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최소부과 요건 배제에 대해서는 본 예외를 적용하지 않았음
 - 반덤핑 조사를 요청한 업체의 경우 전일제 근로자 200명 이상을 둔 관계법인(related body corporate)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았음
 - 5개의 업체 중 나머지 4개 업체가 개인기업이 아닌 계열사(small group of company)의 관계 법인이었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았음
 - 그러나 호주 반덤핑위원회에서는 4개의 관계 법인들이 200명 이내의 가족기업(family business)이었기 때문에 다른 면에서는 중소기업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하여 해석의 여지를 두었음
- 호주 반덤핑위원회는 중국으로부터 수출된 물품에는 특정시장상황이 적용되었고 말레이시아로부터 수출된 물품의 중립가격은 정상가격보다 낮지 않아 최소부과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음
 - 중국의 경우 269TAC(1)에 따른 정상가격을 269TAC(2)(a)(ii)에 따른 특정시장 상황 때문에 확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었음
 - 검정 열연코일은 팔레트레크의 70% 정도를 차지하는 재료로 철강 팔레트레크의 국내 가격을 산정하는 중요 요소이므로, 호주 반덤핑위원회는 중국의 검정 열연코일 및 철강 시장에 대해 조사하였음
 - 호주 반덤핑위원회는 검정 열연코일 시장의 왜곡이 해당 제품에 지불된 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간주하였음
 - 호주 반덤핑위원회는 또한 광범위한 중국 철강산업의 조건을 고려하였는데, 중국 정부가 부분적으로 위원회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팔레트레크 및 검정 열연코일 시장 등에 관한 필요 정보를 얻기가 어려웠음

- 검정 열연코일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전 세계 철강 수출의 18%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여러 다른 철강제품 생산에 핵심적인 투입물이라는 점을 인식하였음

- 호주 반덤핑위원회는 중국의 특정시장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중국의 철강 국영기업에 대해 국영기업의 역할과 작용, 중국 정부의 산업계획, 직간접적 재정 지원, 세금 및 관세정책으로 분류하여 조사하였음
- 호주 반덤핑위원회는 중국 국영기업이 전체 중국 철강 생산량의 약 49%를 차지한다고 밝혔음
 - 중국의 철강 국영기업은 세금 수입을 늘리고 고용을 늘리며 사회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중앙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상당한 직·간접적 재정 지원을 받고 있다고 함
 - 이러한 예에는 정부 보조금, 관련 기업의 지원(직접 보조금, 무이자 대출 또는 대출보증 제공을 통한) 및 국유은행의 대출 등이 있음
 - OECD의 분석에 따르면 철강 산업의 일부 국영기업은 부문 내 상당한 과잉 생산량에도 불구하고 국유은행으로부터 우선 대출을 계속 받고 있다고 함
- 호주 반덤핑위원회는 중국 정부가 계획, 지침을 통해 중국 철강산업에 개입하여 조사 기간 동안 과잉 생산, 공급 과잉 및 왜곡된 시장 구조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판단하였음
 - 세계철강협회(World Steel Association)는 중국 정부가 1990년부터 2016년까지 320개 이상의 철강 관련 정책과 조치를 시행했으며, 그중 절반은 생산능력 관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힘
 - 중국 정부의 관련 산업의 계획 및 지침은 다음과 같음
 - 철강산업의 조정 및 활성화를 위한 청사진(2009), 철강산업을 위한 2011~2015 개발 계획(2011), 철강산업 조정 정책(2015 개정), 철강산업의 과도한 생산 능력 문제 해결 및 어려움 완화에 대한 조언(2016), 철강산업 조정 및 업그레이드

계획(2016~2020), 특정 산업의 초과 용량 및 중복 구조 억제 및 산업의 건전한 발전 지침(2009)에 대한 여러 의견 고지, 주요 산업에서의 기업 인수 및 합병(M&A) 및 재편성 추진에 대한 의견 안내(2013), 심각한 초과 용량 모순 해결에 대한 의견 안내(2013), 산업구조 재조정에 대한 디렉토리 카탈로그(2013 개정), 중앙 기업의 구조조정 및 재구성 촉진에 대한 지침(2016) 등

- 중국 철강산업에는 종종 정부 정책 및 지침이 적용되는데, 제품 품질 및 생산 요구 사항과 관련한 지침에 따른 표준 조건을 준수했을 시 인센티브가 제공됨
- 또한 국가 개발 및 개혁위원회(National Development Reform Commission)는 국가의 계획 또는 지침을 개발하고 관련 기업들에게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승인하는 이중 역할을 통해 중앙정부의 광범위한 목표를 이행하도록 협조하였음

□ 중국 은행은 보조금 및 세금 혜택으로 중국 철강기업의 운영 비용을 절감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철강제품을 제공하여 경쟁 우위를 부여하며, 철강 생산의 수익성을 높이는 데 기여함

- 우선 대출, 지분 통합, 정책 금융, 부채 대 지분 교환, 적은 비용의 토지 지원, 정부가 위임한 인수 합병, 특정 철강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보조금 등
- 이러한 메커니즘은 철강 생산자에게 직·간접적인 재정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조사 기간 동안 중국 철강산업에 직접적으로 기여함

□ 호주 반덤핑위원회는 본 사례에서 코크스 석탄, 코크스, 철광석 및 고철을 포함하여 제강 공정의 여러 주요 투입물에 대한 수출세 및 수출 할당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함

- 수출업자로 하여금 상당한 공급 인센티브를 창출하여 국내 공급을 늘리고 국내 가격을 정상적인 경쟁 시장 조건에 비해 낮추었음
- 중국 정부는 철강 수출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환급 및 수출세를 변경함으로써 내수 판매와 비교하여 철강 수출 및 수출의 상대적 수익성을 변경할 수 있음

- 호주 반덤핑위원회는 중국 정부로부터 수입 및 수출 관세 및 할당량 및 VAT 환급 수준에 관한 정보를 요청했으나 중국정부로부터 응답을 받지 못했음
 - 단 코크에 대해 부과되었던 40%의 수출 관세 및 수출 쿼터가 폐지되었으며, 2017년 철광석에 대한 수출 관세는 10%, 코크스 석탄에 대한 수출 관세는 3%, 고철에 대한 수출관세는 40%였음을 확인함
- 따라서 호주 반덤핑위원회는 중국 정부가 지침과 계획, 보조금 프로그램, 과세제도 등을 통해 조사 기간 동안 중국 검정 열연코일 시장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이로 인해 중국 철강 팔레트레크의 국내 가격이 일반 경쟁적인 시장에서의 가격과 달랐음을 확인하였음

나. 중국 원형 합금바(alloy round steel bar) 사례⁵⁸⁾(EPR384)⁵⁹⁾

- 호주 반덤핑위원회는 269TAC(1)에 따라 중국의 특정시장상황으로 인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기 어려우므로 최소부과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음
- 호주 반덤핑위원회는 조사범위를 넓혀 중국의 철강산업에 대해 조사하였음
 - 조사 이유에 대해 호주가 중국에 요청한 질문지에 중국 정부가 응답하지 않아 원형 합금바 산업에 대해 조사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 중국의 그라인딩 볼, 코일로드 및 철근 시장에 관한 위원회의 이전 시장 상황 평가, 반덤핑위원회의 철강 및 알루미늄 분석보고서, 가격에 대한 비밀 정보(다른 지역 철강 생산업체 및 소비자, 즉 일본, 한국 및 대만에 비해 중국 내 빌렛 및 열연 막대의 내수가격 억제를 파악) 등의 정보를 파악함

58) 본 건의 경우 2019년까지 조사가 진행되어 최종적으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나, 최근 최소부과 요건의 예외 규정을 적용하여 결과를 도출한 사례이므로 삽입하였음

59) 호주 과학혁신산업부, *Anti-Dumping Commission Final Report* No. 384a, https://www.industry.gov.au/sites/default/files/adc/public-record/384-081_-_report_-_final_report_-_rep_384a.pdf, 검색일자: 2020. 1. 16.

- 반덤핑위원회는 중국의 특정시장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중국의 철강 국영기업을 국영기업의 역할과 작용, 중국 정부의 산업계획, 직·간접적 재정지원, 세금 및 관세정책으로 분류하여 조사하였음
- 2010년에서 2015년 사이에 중국 국영기업은 중국 총 철강 생산량의 약 40%를 차지했으며, 10대 중국 철강 생산업체 중 8개 생산업체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됨
 - 철강 생산 국영기업은 세금 수입과 고용을 늘리며 사회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중앙, 지방정부 차원에서 상당한 직·간접적 재정 지원을 받고 있었음
 - 지원 메커니즘은 정부 보조금 관련 기업의 지원(직접 보조금, 무이자 대출 또는 대출 보증 제공, 국유은행으로부터의 대출 등)이 있음
- 특히 호주 반덤핑위원회는 중국 정부의 산업 관련 계획, 지침 등을 통해 중국 철강산업에 관여하여 조사 기간 동안 과잉생산, 공급과잉 및 왜곡된 구조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판단함
 - 중국 정부의 관련 산업의 계획 및 지침은 다음과 같음
 - 국가 철강산업 개발정책(2005), 철강산업의 조정 및 활성화를 위한 청사진(2009), 철강산업을 위한 2011~2015 개발 계획(2011), 철강산업 조정 정책(2015 개정), 철강산업의 과도한 생산 능력 문제 해결 및 어려움 완화에 대한 조언(2016) 등
 - 또한 국가 개발 및 개혁위원회는 NDRC(National Development Reform Commission)는 계획 및 지침을 개발하고 관련 기업들에게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승인하는 이중 역할을 통해 중앙정부의 광범위한 목표를 이행하도록 협조하였음
- 미국 철강협회 및 철강제조업체협회에 의해 식별된 중국 정부가 중국 철강생산자들에게 제공하는 특정 지원 프로그램의 예는 다음과 같음
 - 우선 대출, 지분 통합, 정책 금융, 부채 대 지분 교환, 적은 비용의 토지 지원,

정부가 위임한 인수 합병, 특정 철강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보조금 등

- 서부 지역의 특혜세금 정책, 첨단기술 기업을 위한 특혜세금 정책, 수입된 재료 및 장비에 대한 관세 및 VAT 면제, 혁신적인 실험적 기업 보조금, 비국유 기업을 위한 특별지원 기금, 하이테크 산업의 벤처 투자자금, 외국인 투자로 본사 및 지역본부 설립을 위한 보조금, 물 절약 기금 공제, 반덤핑 응답자 지원, 환경보호 교부금 등이 관련되어 있음

- 이러한 유형의 재정 지원은 관련 업종 기업의 수익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수익성이 없는 생산자를 지원하기도 하면서 시장을 왜곡하게 됨

□ 중국 정부는 전통적으로 특정 수출에 대해 부가가치세 환급 및 세금을 부과해 왔으며, 이를 통해 철강 수출업자를 지원함

- 중국 정부는 철강 수출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환급 및 수출세 부과 비율을 변경하여 철강 수출 및 수출의 상대적 수익성을 변경할 수 있음
- 조사 기간 동안 크롬과 같은 합금을 함유한 철강제품의 수출에 대한 수출세와 VAT 환급이 있었으며, 호주 반덤핑위원회는 이러한 세금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지만 중국 정부는 답변을 거부함
 - 조사 기간 동안 반제품의 수출에 약 25%의 수출세를 유지했으며, 사각형 및 원형 막대를 포함한 합금 제품의 수출세는 약 9~13%였음

□ 이러한 분석들을 바탕으로 반덤핑위원회는 중국 정부가 조사 기간 동안 중국 합금 빌렛 및 합금 바 시장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결론을 내렸으며, 그에 따라 최소부과원칙의 적용을 배제하였음

다. 중국, 브라질, 인도네시아, 태국 A4용지 사례(EPR 341)⁶⁰⁾

- 브라질, 중국, 태국에서 호주로 수출되는 물품의 중립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높으므로 최소부과원칙을 적용하지 않았음
- 호주 광산 및 에너지 건설협회(Construction Forestry Mining & Energy Union)는 중국과 인도네시아의 특정시장상황으로 인하여 최소부과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하였음
- 호주 반덤핑위원회는 원자재 투입, 정부 정책과 보조금 프로그램 및 기타 사법권, 가격 기준 등에 대해 인도네시아와 중국의 시장 상황을 조사하였음
- 그러나 호주 반덤핑위원회에서 중국의 경우 특정시장상황에 적합한 사례가 아니라고 판단함
 - 중국 정부가 중국 펄프산업의 크기와 구조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이것이 중국의 제지산업과 관련되어 있지만, 중국 국내 A4용지 가격을 판단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결정함
 - 중국의 A4용지 생산업체는 주로 수입 펄프를 사용하여 물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정상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함
 - 중국의 펄프는 전형적으로 비슷한 지역(아시아지역)의 기준에 비하면 높았음
 - 중국의 펄프산업은 외부 시장에 현저하게 노출되어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국내 가격과 유사 지역의 가격이 연결되어 있음
 - 외부시장에 노출되어 있다 함은 외국인 투자기업과 중국의 제지산업이 수입된 펄프에 의존되어 있음을 의미함

60) 호주 과학혁신산업부, *Anti-Dumping Commission Final Report* No. 341, https://www.industry.gov.au/sites/default/files/adc/public-record/221_-_report_-_final_report_-_rep_341.pdf, 검색일자: 2020. 1. 17.

- 또한 중국 정부가 지원하는 원조 프로그램의 경우 그 가치가 산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이윤보다 미미한 편이므로, 시장의 왜곡을 일으킬 순 있지만 국내 가격에 영향을 미칠 만큼 충분하지는 않다고 판단함
- 그러나 인도네시아의 경우 특정시장상황에 의해 subsection 269TAC(1)에 다른 정상가격의 산출이 부적절하여 전체 덤핑마진을 관세로 부과하도록 함
- 호주 반덤핑위원회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인도네시아의 산림 및 펄프산업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인도네시아의 종이산업과 제지 시장의 가격이 왜곡되어 있음을 발견하였음
 - 인도네시아 정부의 산림 및 펄프산업 참여는 목재 재배지 개발 및 목재 통나무 수출 금지 등을 통해 A4용지의 국내 가격을 왜곡시켜 다른 지역 기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격을 보임
- 호주 반덤핑위원회는 인도네시아 A4용지 시장이 왜곡된 주요 원인은 인도네시아의 산림 분야이며, 특히 산림과 목재에 인도네시아 정부 정책과 프로그램이 집중되었다고 판단하였음
 - 이러한 정책과 프로그램의 주요 목적은 국가 경제 및 사회를 개선시키고 산림에 의존한 지역경제를 개발하는 것이나, 호주 반덤핑위원회에 따르면 이러한 정책과 프로그램이 목재의 공급을 늘려 인도네시아의 산림 분야 구조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함
 - 해당 정책 및 프로그램으로 국가 산업 개발 마스터플랜 2015~2035, 인도네시아의 임업 장기 개발 계획 2006~2025, 통나무 수출 금지령, 펄프산업 지원을 위한 7백만ha의 자연림 제공, 펄프에 목재 폐기물을 사용할 수 있는 허가 발급 등이 있었음
 - 또한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지역사회 산림 농장(Community Forest Plantations)을 5,400만ha 건립하고자 하였음

- 인도네시아 정부는 1980년대 이후 다시 1990년대에 완성된 A4용지 생산의 25%를 차지하는 통나무에 수출 금지령을 내렸음
 - 인도네시아 정부는 본 수출 금지령의 목적에 대해 국가 제품의 경쟁력 강화, 국내 시장에서 원료의 가용성 유지, 그 밖의 다양한 사회적 목표를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밝힘

- 인도네시아 정부에 따르면 조사 기간 동안 펄프에는 수출 제한을 두지 않았으며, 2009년 계획에 따라 조성된 농장의 통나무에는 수출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밝혔음
 - 인도네시아 정부는 통나무 및 관련 제품의 수출 금지가 아시아 전역(태국, 필리핀, 라오스 및 캄보디아)에서 일반적이며 보조금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함
 - 그러나 호주 반덤핑위원회는 미국 ITC 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인도네시아 정부의 통나무 및 관련 제품의 수출 금지 조치로 국제 시장에서 인도네시아 통나무 가격은 열대 통나무 가격의 절반 정도라고 밝힘

- 목재의 공급이 증가함에 따라 2005년에서 2015년까지 인도네시아의 종이 수출이 높은 비율로 증가하였음
 - 결과적으로 반덤핑위원회는 펄프 생산에 소요되는 비용이 경쟁적인 시장의 기준보다 현저히 낮았기 때문에 관련 물품 혹은 동종 물품의 수출가격이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며, 수출자가 제시한 기록으로는 A4용지의 정상적인 가격을 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함
 - 호주 반덤핑위원회는 인도네시아 A4용지의 국내 가격이 비교 가능한 지역 기준보다 매우 낮다는 것을 확인하였음
 - 예를 들어, 국내 평균 인도네시아 A4용지의 가격은 800~880달러 사이이나, 아시아 지역 가격 기준은 1톤당 900~965달러 사이였음

2. EU

- 2018년도에 개정된 EU의 최소부과원칙 규정은 2020년 현재까지 중국 및 대만, 인도네시아로부터 EU로 수입되는 스테인리스 철강 압연제품 및 러시아에서 EU내로 수입되는 비료원료, 중국의 철강바퀴 등 총 세 가지 사례에 적용되고 있음
- 단 스테인리스 철강 압연 제품의 경우 현재 EU집행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한 단계로, 추후 최소부과원칙의 배제 여부에 대해 추이를 지켜보아야 함
 - 대만을 제외한 중국과 인도네시아에만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최소부과원칙 배제 여부를 조사 중임
- 비료원료의 경우 미국 및 트리니다드토바고를 제외한 러시아에만 최소부과원칙의 적용이 배제되어 덤핑마진으로 관세가 부과되었음
- 두 가지 사례 모두 원자재 왜곡과 관련하여 최소부과원칙의 적용을 배제 또는 배제 검토 중이며, 특히 중국의 경우 EU가 2017년 중국의 비시장경제 지위 만료에 따라 개정된 규정에 따른 중대한 왜곡 보고서가 적용되어 조사를 개시함
- 중국 철강바퀴의 경우 원자재 왜곡에 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았으나, 목표이윤 6%에 관한 개정 규정이 적용되어 잠정 반덤핑관세가 부과되었음

가. 스테인리스 철강 압연제품(Stainless steel hot-rolled flat products, SSHR) 사례(Case AD658)⁶¹⁾

- 2019년 8월 12일 유럽 철강협회의 청원에 따라 EU집행위원회가 중국 및 대만, 인도네시아로부터 EU로 수입되는 스테인리스 철강 압연제품(Stainless steel hot-rolled flat products, 이하 SSHR)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였음
- 본 건은 조사 개시만 이루어졌으며 관세 확정 및 부과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61) EU집행위원회,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EU) 2020/104,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CELEX:32020R0104&from=EN>, 검색일자: 2020. 1. 29.

- 특히 인도네시아와 중국의 경우 제7조(2a)에 따른 원자재 왜곡이 의심되어 관련 조사를 진행하도록 함
 - 중국은 EU집행위원회가 2017년 12월에 발표한 무역구제 조사의 목적을 위한 중국 경제의 중대한 왜곡(Report on Significant Distortions in the Economy of the PRC for the purposes of the trade defence investigations)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에서 2020년까지 5년간 중국의 기본산업인 철강산업 분야에서 물품의 생산과 판매가 특정시장상황에 해당하며, 원자재와 관련된 왜곡이 있다고 보았음
 - 중국의 경우 니켈과 크롬에 수출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수출을 제한하였고, 인도네시아의 경우 니켈에 10%의 수출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원자재 시장을 왜곡하고 있음
 - 원자재 왜곡이 발생한 니켈과 크롬의 비율이 17% 이상이었으므로, 제7조(2a)에 해당하여 최소부과원칙을 배제할 수 있음

- 따라서 EU집행위원회는 대만을 제외한 중국과 인도네시아에는 제7조(2a)에 따라 원자재 왜곡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만약 조사결과 최종적으로 왜곡이 발생하였다면 제7조(2b)에 따른 공공의 이익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게 됨
 - 이해당사자는 EU집행위원회가 기본규정 제7(2a)조에 따라 조치의 수준을 설정하는 것이 연합 이해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모든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됨
 - 특히 이해 관계자는 관련 국가의 유희 생산능력, 원자재 경쟁 및 유럽 기업의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협력이 없는 경우 EU집행위원회는 기본규정 제7(2a)조를 적용하는 것이 EU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다고 결정할 수 있음

나. 비료원료(mixtures of urea and ammonium nitrate) 사례(Case AD649)⁶²⁾

- 2018년 8월 EU집행위원회는 러시아, 트리니다드 토바고, 미국에서 EU 내로 수입되는 비료원료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였으며, 2019년 10월 확정 반덤핑관세 부과 시 러시아에만 최소부과원칙을 배제하여 20~31.9%의 덤핑마진을 적용함
- 트리니다드 토바고의 경우 16.2%(덤핑마진 55.8%), 미국의 경우 23.9%(덤핑마진 37.3%)가 부과되었으며, 러시아의 피해마진은 13.7~16.3%였음
- 러시아 수출업체들은 EU 규정 Regulation(EU) 2018/825 제7(2a)조에 따라 최소부과원칙을 러시아에만 적용하지 않은 것은 WTO 제9.2조에 반하는 차별적 방식으로, 반덤핑관세가 징수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음
- WTO 반덤핑협정 제9.2조에서는 덤핑이 이루어져 피해를 초래한다고 판정된 모든 수입원으로부터 당해 상품의 수입에 대하여 각 사안별로 적정한 금액의 반덤핑관세를 무차별원칙에 따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⁶³⁾
- 러시아 수출자들은 EU집행위원회가 기본규정의 제7(2a)조에 따라 조사의 시작을 정당화하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 더불어 업체 중 하나는 이러한 왜곡 조치의 결과, 러시아 시장의 가스 가격이 대표 국제 시장의 가격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사실과 해당 제품의 생산에 천연

62) EU집행위원회,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EU) 2019/1688,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CELEX:32019R1688&from=EN>, 검색일자: 2020. 1. 30.

63) WTO 반덤핑협정 제9.2조 전문, 외교통상부, http://www.mofa.go.kr/www/brd/m_3893/view.do?seq=294185, 검색일자: 2020. 1. 30.

상품에 대하여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가격 약속이 수락된 수입원으로부터의 수입품을 제외하고는, 덤핑이 이루어져 피해를 초래한다고 판정된 모든 수입원으로부터의 당해 상품의 수입에 대하여 각 사안별로 적정한 금액의 반덤핑관세를 무차별원칙에 따라 징수한다. 당국은 관련 상품의 공급자를 지명한다. 그러나 동일국의 다수의 공급자가 관련되고 공급자 전부를 지명하는 것이 실행 불가능할 때에는 당국은 관련 공급 국가를 지명할 수 있다. 2개국 이상으로부터 다수의 공급자가 관련된 때에는 모든 공급자를 지명하거나, 이것이 실행 불가능한 경우 관련된 모든 국가를 지명할 수 있다.

가스의 비용이 17% 이상이며 이중가격제로 왜곡되어 있다는 결과에 대해 반대를 제기함

- 특히 러시아 수출 생산업체는 원자재 왜곡의 존재에 대한 국가 차원의 결정은 업체 개별 상황이 있으므로 적용될 수 없고 러시아 정부의 협력 부족으로 개별 업체가 처벌받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 EU가 제시한 업체 Waldhaus의 가격이 미국과 같은 국제 시장의 대표가격이 아니라고 주장함

□ 그러나 EU집행위원회는 조사 대상이 되는 다른 수출국과는 관련이 없고 러시아에 대해서만 Regulation(EU) 2018/825 제7(2a)조에 따른 원자재 왜곡이 존재함을 발견하였음

- WTO 반덤핑협정 제9.2조가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은 동일한 두 가지 상황이 다른 방식으로 취급되거나 다른 두 가지 상황이 동일한 방식으로 취급될 때이며, 러시아의 경우 트리니다드토바고 및 미국과는 비교 가능한 상황이 아니며 러시아에서만 왜곡을 발견한 상황이라고 보고함
- 따라서 원자재 왜곡이 있는 러시아의 수출 생산업체 상황은 트리니다드토바고와 미국의 왜곡이 없는 수출 생산업체의 상황과 비교할 수 없으므로 러시아의 주장을 기각함

□ 또한 EU집행위원회는 EU의 제소자가 충분한 증거를 제공했으며, 천연가스와 관련하여 러시아의 이중 가격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고 함

- 러시아 가스의 내수 가격과 EU 수출가격을 비교한 결과, 후자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 EU가 선정하여 제시한 Waldhaus 업체의 가격이 대표적인 국제 시장 가격에 대한 적절한 기준이 될 수 있으며, 만약 EU집행위원회가 미국 시장을 대표 국제 시장으로 간주하더라도 러시아 시장의 비료원료 수출 가격이 여전히 20% 낮다고 언급함

- 그러나 러시아 업체들은 제7(2a)조를 개별 업체의 상황을 반영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며, 러시아 정부의 협력 부족으로 개별 업체들이 처벌받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함

- 러시아 업체들의 주장에 대해 EU집행위원회는 개별 데이터에 근거하여 수행되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제7(2a)조를 적용했다는 주장을 기각하였음
 - 실제로 관련 제품의 생산 비용 분석, 회사의 천연가스 구매가격과 왜곡되지 않은 가격 기준 및 천연가스 비용의 비율, 가스의 공급원뿐만 아니라 생산비용은 모두 회사의 개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조사하였음
 - 또한 러시아 업체들은 천연가스 공급원에 관계없이 수출 제한 및 수출 세금으로 인한 왜곡된 천연가스 가격의 혜택을 받았음
 - 러시아 정부의 협력 부족에 따라 개별 업체들이 피해를 입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러시아의 민간 가스업체는 수출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러시아 측 주장을 기각함

- 러시아 수출 생산 업체 중 하나는 제7조(2a)의 적용이 기본규정 제7조(2b)에 따라 연합의 이익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함
 - 러시아 생산자는 러시아의 가스 가격 규제로 인해 천연가스와 관련하여 불공정한 이점이 없다고 주장하며, 러시아 내수 시장에서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Gazprom⁶⁴⁾ 외 다른 공급 업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함
 - 또한 두 러시아 수출 생산자들은 예비 유희생산 능력에 대한 발견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며, Eurochem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러시아 비료의 수출 감소가 예상된다고 주장함

64) 러시아에서 가장 큰 국영 천연가스 추출기업

- 그러나 EU집행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주장은 러시아 전체의 예비 역량과 관련하여 EU집행위원회가 내린 전반적인 결정이 변하지 않으며, 러시아는 최소한 가까운 장래 수출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측의 주장을 기각함
- 또한 러시아가 규제하는 최대 가격과 Gazprom의 지배적 위치를 고려하였을 때 천연가스 수출 시 다른 소규모 공급 업체는 이 규정된 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제시하게 되어 러시아의 경쟁은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
 - 더불어 러시아 비료 기업은 비료 생산에 사용되는 천연가스에 부과된 30%의 수출세로 인해 불공정한 이점을 누리고 있다고 결정함
- 러시아 생산업체 중 한 업체는 EU 산업이 러시아로부터 비료 생산의 반제품인 상당한 양의 암모니아를 수입하였으며, 러시아의 낮은 가스 가격으로 인해 간접적으로 혜택을 입었다고 주장하였으나 기각됨
 - EU집행위원회가 수집한 증거에 따르면, EU연합의 산업은 다양한 보고원에서 암모니아를 생산했으며 러시아에서 상당한 양의 암모니아를 수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EU집행위원회는 개정된 규정 제7조(2c)를 적용하여 모든 투자비용, 생산비용, R&D 비용을 고려한 목표이윤율 6%를 생산원가에 더하여 피해마진을 산정하였음
- EU는 제7조(2d)에 따라 배출거래시스템 준수 비용으로 CO₂ 1톤당 25.81유로를 반영하기로 결정하였음
 - Acron이라는 러시아 업체는 과거의 생산가에 미래의 발생 예정 비용을 추가하는 것이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EU집행위원회에서는 법적 근거에 따른 결정이므로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밝힘

다. 기타 중국 철강바퀴 사례(Case AD652)⁶⁵⁾

- EU집행위원회는 중국에서 역내로 수입되는 철강바퀴에 2019년 10월 잠정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였음
 - 본 건에 대해서도 스테인리스 철강 압연제품 사례와 마찬가지로 EU집행위원회가 발간한 중국 경제의 중대한 왜곡(Report on Significant Distortions in the Economy of the PRC for the purposes of the trade defence investigations) 보고서가 적용되었음
 - 중국 시장은 사회주의 경제국가로 국가가 개입되어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최소부과원칙 개정 규정 적용에 있어서 제7조(2a)에 따른 왜곡된 원자재와 에너지가 물품 전체의 생산비용에서 17%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는 아니었기 때문에 적용을 배제하였음
 - 그러나 국영은행이 국가 산업정책에 따른 대출정책의 실행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기 때문에 중국 재정 분야의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는 여지를 남김
 - 따라서 최소부과원칙을 적용하여 덤핑마진이(69.4~80.1%) 아닌 피해마진으로 (50.3~66.4%) 잠정 반덤핑관세를 부과하였음
- 2019년의 AD 652 중국의 철강바퀴의 경우 개정된 규정 제7조(2c)를 적용하여 목표이윤율 6%를 생산원가에 더하여 피해마진을 산정하였음
 - 피해마진 산정 시 개정된 규정 제7조(2c)에 따라 최소 목표이윤 6%를 반영하기 위해 다음의 요인들을 고려하였음
 - 중국에서의 수입 증가 전 이윤 수준
 - 자체 비용 및 투자비용을 상쇄하기 위한 이윤 수준
 - R&D 비용 및 혁신 비용
 - 정상적인 경쟁 상황하에서의 이윤 수준

65) EU집행위원회,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EU) 2019/1693,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CELEX:32019R1693&from=EN>, 검색일자: 2020. 2. 1.

- 조사 기간 동안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꾸준히 증가하였기 때문에 목표이윤을 산정하기 어려웠으며, EU집행위원회는 이에 연합 산업의 실제 생산가에 제7조 2(c)를 적용한 6%의 목표이윤을 가산하여 적정가를 산출하였음
- 규정 제7조(2a)에 따른 원자재 왜곡 등에 따른 최소부과원칙의 배제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제7조(2d)의 경우 EU 업체의 제소 시 별도의 적용 요청이 없어서 적용되지 않았으므로 피해마진 산정에 반영되지 않았음
- 제7조(2d)에 따른 EU가 당사자인 환경협약 및 ILO 협약과 관련된 현재 또는 미래의 추가적인 발생 비용은 반영되지 않았음

Ⅵ. 국제 비교 및 소결

- 각국은 미국발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세계적인 보호무역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구제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자국의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자 함
 - 반덤핑, 상계관세, 보조금 등의 무역구제제도는 WTO에서 용인된 제도로서, 타국의 수입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안임
-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사회의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여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무역구제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 특히 2020년 우리나라 정부의 경제정책 중 하나는 적극적 거시정책 및 통상 관련 리스크 모니터링 및 대응으로, 2019년 정부의 100대 핵심과제 중 하나였던 보호무역주의 대응 및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와 같은 맥락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⁶⁶⁾
 - 관계부처 합동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G20 등과의 국제 공조를 강화하여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공동 대응하고, 국제 규범에 어긋나는 경우 WTO에 제소하는 등 적극 대처하고자 함⁶⁷⁾
- 최소부과원칙은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되는 덤핑물품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시 덤핑마진 비율보다 낮은 피해마진 비율을 적용하는 제도로서, 본 규정을 적용하는 각국은 자국의 무역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규정을 개정 또는 폐지하고 있음

66) 기획재정부, 『경제정책방향』, <http://www.moef.go.kr/pr/ep/ecnmyPolicyDetail.do?menuTitle=06&half=01&year=2020&partType=1001#06>, 검색일자: 2020. 2. 12.

67) 관계부처합동, 『2020년 경제정책방향』, 2019, p. 33.

- 인도의 경우 최소부과원칙 폐지를 결정하여 무역구제 관련 법을 개정 중임
 - 2019년 9월 11일 인도 무역구제총국 발표에 따르면 최소부과원칙을 폐지하여 덤핑마진으로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있음⁶⁸⁾
- 따라서 본 장에서는 앞서 조사한 각국의 최소부과원칙과 관련한 규정의 개정 내용 및 관련 적용사례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최소부과원칙 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과 그 한계에 대해 살펴보하고자 함

1. 시장의 왜곡 관련 규정

- EU는 2017년 12월 20일 반덤핑규칙(Regulation(EU) 2017/2321)을 통해 기존 반덤핑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중대한 왜곡’ 여부를 기준으로 무역구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하였음⁶⁹⁾
- 시장경제국과 비시장경제국으로 구분하던 기존 방식을 벗어나, 중대한 왜곡이 발생한 국가의 경우 시장경제국 유무와 상관 없이 종전과 유사한 수준의 무역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중대한 왜곡 요소는 국영기업의 시장 장악, 가격 및 비용 측면에서의 국가 개입, 외국기업 차별, 파산법, 기업법, 재산법 등의 부족, 임금 왜곡 등임
- 심각한 왜곡의 입증 책임은 EU집행위원회가 가지며 특정 국가 및 분야의 시장 왜곡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할 수 있게 되어 제소 업계의 부담을 덜어주었음
- EU집행위원회는 현재 중국에 대한 ‘중대한 왜곡’ 보고서를 발표하였으며, 이 보고서에 따라 중국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개시 또는 진행되고 있음

68) KITA, 「2019년 수입규제 돌아보기」, 『통상 리포트』, Vol. 4, 2019, p. 32.

69) 강민지, 『미국과 EU의 무역구제조치 관련법 개정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8, pp. 24~25.

- EU는 위의 법 개정과 관련하여 해당 교역 대상국이 수출세 부과, 이중가격체제 운영, 국내 시장 왜곡 등으로 원자재 교역에 개입하는 경우 EU 역내 생산자 보호를 위해 Regulation(EU) 2018/825에 최소부과원칙 적용 예외를 규정하여 최근 몇 가지 사례에 적용 중임
 - 특히 왜곡된 원자재와 에너지 비용이 전체 생산비용 중 17% 이상일 시 최소부과원칙을 배제하고, 피해마진 산정 시 목표이윤이 어떤 경우에도 6%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보다 더 강화된 보호무역주의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음
- 호주도 또한 2014년 최소부과원칙 규정 개정을 통해 EU의 경우와 유사한 특정 시장상황에 따른 적용 예외를 규정하여 최근 몇 가지 사례에 적용 중임
 - 2005년 호주의 중국에 대한 시장경제 지위 인정과는 별개로 중국의 팔레트레크에 대해 특정시장상황을 적용하여 최소부과원칙 적용을 배제하였으며, 인도네시아의 A4용지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적용을 배제하였음
- EU는 중국의 시장경제 지위 만료에 따라 위와 같이 예외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호주 또한 특정시장상황에 따른 최소부과원칙의 적용 예외를 두어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데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관련 대비책이 부족한 것으로 보임
 - EU 및 호주가 특정시장상황을 판정하는 부분인 국영기업의 역할과 작용, 정부의 산업계획, 정부의 직간접적 재정지원, 세금 및 관세정책 등에 대해 조사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성 또한 증대되고 있음
 - EU의 경우 EU집행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라 조사를 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조사 개시가 보다 수월해졌으며, 이와 관련하여 최소부과원칙 예외 규정의 적용 또한 수월해짐
 - 피소 기업의 대응이 없으면 외국 정부는 자국 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덤핑 혐의를 판단하는데, 사실상 대응력이 약한 중소기업의 경우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기 어려움

- 따라서 보호무역적인 성향으로 개정되고 있는 최소부과원칙 규정 적용에 대해 사전적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최근 개정 규정을 적용 중인 EU와 호주의 적용 사례들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관련 규정 또한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특히 호주의 반덤핑매뉴얼과 유사한 성격의 우리나라의 최소부과원칙 관련 무역예규는 2010년 이후 개정된 적이 없음

2. 중소기업 관련 규정

- 호주는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산업의 제조 기업들 중 2개 이상의 기업이 「기업법」 및 「반덤핑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최소부과원칙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 중소기업은 관련 산업의 생산 또는 제조업체로 풀타임 근무자 200명 혹은 더 적은 수의 근무자로 운영되는 독립적인 기업으로서 관계 법인이 아니어야 함
- 2019년까지 본 규정을 적용하여 최소부과원칙을 배제한 사례는 없었으나 최근 몇몇 사례의 경우 관련 업체들의 요구에 따라 호주 반덤핑위원회가 본 규정을 적용하여 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였음
- 특히 중국에서 호주로 수입되는 팔레트레크 사례에서 호주 반덤핑위원회에는 제조업체들이 중소기업 결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최소부과원칙을 배제하지 않았으나 중소기업의 판정에 대한 해석상의 여지를 두었음
- 4개의 기업이 독립적인 기업이 아닌 계열사의 관계 법인이지만(related body corporate) 200명 이내의 직원을 보유한 가족기업(family business)이었기 때문에 다른 면에서 중소기업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정의하였음
- 중소기업벤처부의 2019년 기본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2017년 기준으로

국내 중소기업은 총 630만개이며, 전체 기업의 9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중심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음⁷⁰⁾

- 따라서 중소기업 중심의 우리나라 국내 산업 구조를 고려하였을 때 호주의 사례를 참고하여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부과원칙 규정의 예외를 두는 방식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반덤핑법」에서 중소기업에 대해 별도로 정의하고 있어 관세부과 등의 조치를 적용할 시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 범위를 규정할 수 있는 호주와 달리, 우리나라는 「관세법」상에서 중소기업과 관련한 반덤핑 조치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음

3. 기타 관련 규정

가. 노동 및 환경 관련 규정

- 중대한 왜곡 외에도 EU는 제7조(2d)의 규정을 신설하여 ILO 협약 및 EU가 당사자인 다자간 환경협약에 따라 EU 업체가 준수해야 하는 비용을 목표가격 산정 시 반영하고 있음⁷¹⁾
- ILO 협약은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에서 정한 바 세계 어떤 노동자라도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보편적 국제규범으로, ILO 협약 기준은 국제무역과 투자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한 기본적인 국제 규범의 준수를 의미함
- 다자간 환경협약은 환경파괴를 줄이거나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다자간에 체결된 200여 개의 협정, 협약 및 의정서로, 특히 20여 개의 협정은 구체적인 무역조치를 포함하고 있음

70) 중소기업벤처부, 「기본통계」, <https://www.mss.go.kr/site/smba/06/10602010000002016102405.jsp>, 검색일자: 2020. 2. 10.

71) 정책위키, 「ILO 핵심협약」, <http://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2514>, 검색일자: 2020. 2. 10.

- 각 회원국은 ILO의 협약을 자국의 국내적 절차에 따라 비준하며 협약의 비준은 회원국의 자율이지만, 비준된 협약은 그 국가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됨
- 본 규정에 따라 EU집행위원회는 최근 러시아에서 수입되는 비료원료 사례에서 목표가격에 EU 배출거래시스템(EU Emissions Trading System) 준수 비용으로 CO₂ 1톤당 25.81유로를 반영하였음
-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와의 반덤핑 조사 건에도 본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EU의 최소부과원칙 관련 조사 개시 및 결정 사례 등에 대해 EU가 당사자로 있는 환경 및 ILO 핵심협약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주의 깊게 그 추이를 관찰할 필요가 있음⁷²⁾
 - 특히 ILO 핵심협약의 경우 우리나라는 균등 대우에 관한 제100호 협약과 제111호 협약, 아동노동 금지에 관한 제138호 협약과 제182호 협약 등 4개 협약은 비준했으나, 결사의 자유에 관한 제87호 협약과 제98호 협약,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제29호 협약과 제105호 협약 등 4개 협약은 아직 비준하지 못하고 있음
 - 2018년 3월 4일 EU집행위원회는 우리 정부에 ILO 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왔으며, EU 집행위원은 한-EU 자유무역협정상의 노동 관련 의무인 핵심협약 비준이 지연되고 있어 조속한 시일에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진전이 없을 시 전문가 패널 개시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였음
 - 또한 이와 관련하여 EU는 별도의 통상감찰관 제도를 도입할 예정으로, EU가 이미 체결했거나 앞으로 체결할 무역협정의 환경·노동규범 이행 감시와 무역구제조치 강화를 목적으로 하여 무역협정 내 환경 및 노동규범을 위반한 기업은 무역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⁷³⁾
 - 현재 정부는 2019년 100대 국정과제의 63번째인 노동·존중·사회실현 분야에서 주요내용에 ILO 핵심협약 비준을 포함시켰으며,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ILO 핵심협약 비준을 통한 노동기본권 보장이라는 항목으로 해당 내용을 포함시켰음

72) 정책위키, 「ILO 핵심협약」, <http://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2514>, 검색일자: 2020. 2. 10.

73) 무역협회 보도자료, 「신임 EU집행위, 환경·노동규범 강화한다」, 2019. 11. 28., <https://www.kita.net/asocGuidance/nesDta/nesDtaDetail.do?sNo=8969>, 검색일자: 2020. 2. 18.

나. FTA 관련 규정

- 본 보고서에서 조사한 EU 및 호주의 경우 최소부과원칙의 예외 규정을 적용한 국가들과는 FTA 관련한 분쟁의 발생 가능성은 없음
 - EU가 최소부과원칙 개정 규정을 적용한 국가는 중국 및 러시아로, FTA 미체결 국임
 - 호주가 최소부과원칙 개정 규정을 적용한 국가는 중국 및 인도네시아로, 호주-중국 FTA 및 아세안-호주-뉴질랜드 FTA 모두 협정문상 최소부과원칙을 규정하지 않았음

- 우리나라는 FTA 협정상 반덤핑에 대해 최소부과원칙을 의무로 협정문상 명시하고 있어 향후 본 규정을 협정 당사국에 대해 적용하지 않을 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⁷⁴⁾
 - 현재 발효 중인 FTA 중 우리나라가 FTA 협정상 최소부과원칙을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FTA는 한-싱가포르, 한-EU, 한-인도, 한-페루, 한-EFTA, 한-호주, 한-캐나다, 한-뉴질랜드, 한-베트남, 한-콜롬비아, 한-중미임⁷⁵⁾

- 그러나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국인 중국, 미국 등 FTA상 최소부과원칙을 의무화하지 않은 국가도 있고 각 협정별로 규정이 일부 다르므로 예외 규정의 삽입 및 기존 규정 개정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EU 및 콜롬비아와의 FTA 협정문상에는 최소부과원칙의 이행이 Should로 표기되어 있고, EFTA, 인도, 싱가포르 등에는 Shall로, 터키의 경우 be expected to 등으로 규정되어 달리 해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함
 - 또한 협정문상 언급이 없는 페루, 베트남의 경우에는 최소부과원칙을 비교적 신축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74) 안덕근, 「반덤핑 운영체계 개선과제」, 『무역구제학회정책심포지움자료집』, 2019. 10. 25, p. 36.

75) 산업통상자원부 FTA 포털, 「FTA 협정문」, <https://www.fta.go.kr/main/>, 검색일자: 2020. 2. 12.

참고문헌

- 강민지, 『미국과 EU의 무역구제조치 관련법 개정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8.
- 관계부처 합동, 『2020년 경제정책방향』, 2019. 12. 19.
- 김광석, 「EU와 비교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반덤핑제도의 개선방향」,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 김세환, 「EU 반덤핑법상 최소부과원칙에 대한 연구」, 『유럽헌법연구』 제27호, 2018.
- 무역위원회, 『30년사 공정무역 질서 확립 30년을 담다』, 2017.
- 무역위원회예규 「제2010-2호 덤핑수입 또는 보조금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국내 산업피해조사 실무지침」
- 무역협회 보도자료, 「신임 EU집행위, 환경·노동규범 강화한다」, 2019. 11. 28., <https://www.kita.net/asocGuidance/nesDta/nesDtaDetail.do?sNo=8969>, 검색일자: 2020. 2. 18.
- 박노형·박성훈, 『WTO 규범협상의 현황과 향후 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0.
- 법무법인 세종, 『DDA 반덤핑협정 의장 수정안 분석』, 2009.
- 손기윤, 「DDA협상의 평가와 전망: 반덤핑협정」, 『국제경제법연구』 창간호, 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03.
- 안덕근, 『산업피해 구제수준의 합리적 운용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2009.
- _____, 「불공정 무역행위 및 산업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방안 연구」, 산업자원부·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연구소, 2012.
- _____, 「반덤핑운영체계 개선과제」, 『무역구제학회정책심포지움』, 2019. 10. 25.
- 안민호, 「DDA 규범협상의 반덤핑협정 관련 주요 쟁점」, 『국제경제법연구』 제7권 제2호, 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09.
- 원종학·구자은·김태훈·조진권, 『외국의 덤핑방지관세제도 중 최소부과원칙 운영현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07.

이건호, 「반덤핑 조사 시 Lesser duty 적용에 관한 연구」, 『무역구제』, 2001년 4월 2호, 무역위원회, 2001.

정재호·노영예·박지우, 『주요국의 반덤핑 직권조사 규정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

정재호·이재민,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제도 활용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3.

표인수·유세열, 『무역구제제도의 활성화와 우회덤핑 및 최소부과원칙(lesser-duty rule)의 재검토』, 한국국제통상학회, 2018.

현정택·조연상, 「반덤핑제도의 최소부과원칙 적용방식 개선방안」, 『통상법률』, 법무부 국제법무과, 2012.

홍순파, 『산업피해 구제 수준에 대한 검토』, 무역구제논단, 2005.

KITA, 「2019년 수입규제 돌아보기」, 『통상 리포트』, Vol. 4, 2019.

호주 반덤핑위원회, 『호주 반덤핑 및 보조금 매뉴얼(Dumping and Subsidy Manual』, 2018. 11.

Regulation(EU) 2018/825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기획재정부, <http://www.moef.go.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전문가 포럼, <https://csf.kiep.go.kr/home>

무역위원회, <http://www.ktc.go.kr>

산업통상자원부 FTA포털, <https://www.fta.go.kr/main/>

정책위키, <http://www.korea.kr/>

중소기업벤처부, <https://www.mss.go.kr>

KOTRA, <https://news.kotra.or.kr>

WTO, <https://docs.wto.org/>

EU집행위원회, <https://trade.ec.europa.eu/>

호주 과학혁신산업부, <https://www.industry.gov.au>

관세연구 19-03
최소부과원칙 규정 개정사례 연구

발 행 2019년 12월 31일
저 자 정재현 · 노영예
발행인 김유찬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년 7월 15일 제2014-24호
조 판 및 (주)계문사
인 쇄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9 ISBN 978-89-8191-596-4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관세연구 19-03

최소부과원칙 규정 개정사례 연구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14 www.kipf.re.kr

